

2019년  
사회적 가치지표(SVI)  
활용 매뉴얼  
-참여기업용-



본 매뉴얼 활용은 진흥원과 사전 협의 완료 후 사용이 가능합니다.

2019

사회적 가치지표

(SVI) 활용 매뉴얼

고용노동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Contents —

|     |                      |    |
|-----|----------------------|----|
| I   | 사회적가치 측정 개요          | 3  |
|     | 1. 사회적 가치란           | 4  |
|     | 2. 지표구성              | 6  |
|     | 3. 역할 및 측정절차         | 9  |
|     | 4. 기타                | 10 |
| II  | 참여기업 매뉴얼             | 11 |
|     | 1. 총괄표               | 12 |
|     | 2. 지표별 작성 방법         | 13 |
|     | 3. 사회적 가치측정 신청서 작성양식 | 42 |
| III | 증빙 자료 서식 및 참고예시      | 53 |
| 부록  | 측정기준표                | 61 |

# 1

## 사회적가치 측정 개요

O v e r v i e w

---

- 01 사회적 가치란
- 02 지표구성
- 03 역할 및 측정절차
- 04 기타

# 01

## 사회적 가치란?

### 사회적가치

- 경제적 회계가 측정할 수 없는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 발전 등에 기여하는 가치를 의미하며, 사회적 가치 실현은 공동체의 발전을 위한 “공익(Public interest)의 실현”을 의미.

#### ※ 정부 및 정책동향

“사회, 경제, 환경, 문화 영역의 공공 이익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는 가치”를 사회적 가치로 보고, 핵심국정과제로 공공부문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강조(특히 인권, 안전, 환경 및 양질의 일자리 영역)

\* 국정과제 8(열린 혁신정부, 서비스하는 행정), 12(사회적 가치 실현을 선도하는 공공기관), 26(사회적경제 활성화)

### 사회적 가치지표(SVI: Social Value Index)

- 경제적 회계가 측정할 수 없는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 발전 등에 기여하는 가치를 의미하며, 사회적 가치 실현은 공동체의 발전을 위한 “공익(Public interest)의 실현”을 의미.
- 본 지표는 다양한 사회적 경제 분야 지원사업의 기업 선정과정에서 참여하는 개별기업의 사회적 가치창출 수준을 파악하여 참고할 수 있도록 구성된 지표
- 또한 본 지표는 측정·평가과정에서의 각 단계별 이해관계자(현장·조사자·전문가) 등의 의견취합 및 감수를 통해 지속적으로 개선·보완 추진 예정
- 방대하고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측정하는 판단기준 중에서 현장의 활용도를 고려하여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사회적경제기업이라면 꼭 확인해봐야 할 최소한의 필요한 지표만을 구성하여 간소화 함

#### 〈참고〉 사회적 가치 측정지표 관련 동향

- 사회적 가치측정은 성과측정의 목적과 활용방법에 따라 다양하게 적용되고 있으며 통일되거나 일반적인 방법은 아직 존재하지 않음
- 실무적으로 사회성과 투자수익률(SROI), 사회영향 투자보고서 및 투자기준(IRIS), 글로벌 사회 성과투자 평가시스템(GIIRS), 균형 성과지표(BSC)를 이용한 성과측정 도구 등이 연구되고 있음

## 필요성 및 목적

- 사회적경제기업이 창출하는 사회적 가치수준을 측정하고 개별기업 피드백을 통한 가치창출 제고 및 우수기업과 외부 공공·민간기관과의 연계를 지원
- 다양한 사회적경제분야의 지원사업 및 기업선정 시 사회적 가치측정 도구로 직접 활용 또는 심사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사회적 가치 정보제공
- 종합적인 사회적 가치측정이 필요한 경우, '사회적 성과, 경제적 성과, 혁신성과'관점 모두를 포함하여 활용 가능
- 기업의 경제적 가치를 별도 방법으로 평가하는 경우, 지표 내 '경제적 성과'관점을 제외한 '사회적 성과, 혁신성과' 관점만을 부분 활용 가능

## 대상 및 내용

- 대상: 사회적 목적 및 가치를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의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사회적경제기업 또는 조직
- 측정내용
  - '사회적 성과' 관점은 조직 미션, 사업 활동, 조직 운영 등에 대해서 평가
    - \* 사회적 미션의 관리, 주 사업 활동의 사회적 가치, 사회적 경제 생태계 구축 노력, 이윤의 사회목적 재투자, 운영의 민주성, 근로자 지향성 등 평가
  - '경제적 성과' 관점은 기업의 종합적인 재정성과에 대하여 평가
    - \* 고용창출 및 재정성과, 노동성과 등을 평가
  - '혁신 성과' 관점은 기업의 혁신노력 및 성과에 대해서 평가
    - \* 기업 활동에서의 혁신성 평가

### ※ 지표 구성 시 고려한 사항

- 가능한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지표를 수용할 수 있도록 구성
- 현실적으로 측정 가능해야 하고, 운영 가능한 수준으로 구성
- 특정 지표의 측정결과가 큰 영향을 발휘하지 않도록 하고, 특정 사회적기업 유형이 상대적으로 유리하거나 불리하지 않도록 고려하여 구성
  - \* 지표는 향후 지속적인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통해 보완·개선 예정

## 02

## 지표구성

### 사회적 가치지표(SVI) 총괄표

| 관점             | 범주               | 영역                       | 측정지표                       | 배점  |
|----------------|------------------|--------------------------|----------------------------|-----|
| 사회적 성과<br>(60) | 조직 미션<br>(7)     | 사회적 미션<br>(7)            | 1. 사회적 가치 추구 여부            | 2   |
|                |                  |                          | 2. 사회적성과 관리체계 구축여부         | 5   |
|                | 사업 활동<br>(33)    | 주사업활동의<br>사회적 가치<br>(15) | 3. 사업활동의 사회적 가치 지향성(비계량지표) | 15  |
|                |                  | 사회적경제<br>생태계 구축<br>(8)   | 4. 사회적경제기업과의 협력 수준         | 5   |
|                |                  |                          | 5. 지역사회와의 협력 수준            | 5   |
|                | 사회목적 재투자<br>(10) |                          | 6. 사회적 환원 노력도(비계량지표)       | 10  |
|                |                  |                          | 7. 참여적 의사결정 비율             | 5   |
|                |                  |                          | 8. 근로자 임금수준                | 8   |
|                | 조직 운영<br>(20)    | 운영의 민주성<br>(5)           | 9. 근로자 역량강화 노력             | 5   |
|                |                  | 근로자 지향성<br>(15)          | 10. 고용성과                   | 10  |
|                |                  |                          | 11. 매출성과                   | 10  |
|                | 재정 성과<br>(30)    | 고용창출 및 재정성과<br>(25)      | 12. 영업성과                   | 5   |
|                |                  |                          | 13. 노동생산성                  | 5   |
|                |                  | 노동성과<br>(5)              | 14. 혁신노력도(비계량지표)           | 10  |
| 혁신 성과<br>(10)  | 기업 혁신<br>(10)    | 혁신성<br>(10)              |                            |     |
| 계              |                  | 14개 지표                   |                            | 100 |

#### ※ 지표모형의 특성

- 관점별로 사회적 성과(60%), 경제적 성과(30%), 혁신 성과(10%)로 구성
- 계량(65%), 비계량(35%)으로 구성
- 지표가 활용되는 사업의 특성 및 목적에 따라 ‘사회적 성과, 경제적 성과, 혁신 성과’ 3대 관점별로 유연하게 적용 가능하도록 구성(지표의 모듈화)

- 측정모형은 사회적경제기업이 지향하는 사회적 가치기준의 속성을 기준으로 '관점 - 범주 - 영역 - 측정지표'의 순차적인 지표 프레임 구성
- 사회적기업 육성법, 협동조합 기본법,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 협동조합 원칙 등의 관련 법령 및 자료의 내용을 참조하여 지표 구성

#### ※ 지표구성 시 참고 법령 및 자료

- 사회적기업육성법: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 제공, 지역사회에 공헌, 유급근로자 고용, 영업활동, 이해관계자 참여 의사결정구조, 교육훈련의 실시, 영업활동을 통한 이익의 민간 및 지역과 파트너십 강화
- 협동조합기본법: 재화의 구매·생산·판매·제공, 조합원의 권리향상, 지역사회 공헌, 직원 교육 훈련 적극적인 수행 등
- 협동조합 7대 원칙: 자발적이고 개방적인 조합원 제도,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관리, 조합원의 경제적 참여, 자율과 독립, 교육·훈련 및 정보제공, 협동조합간의 협동,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 관점

사회적기업의 정의 및 가치 등 공통요소의 추출을 통해 핵심 키워드를 사회적 성과, 경제적 성과, 혁신 성과로 구성

### ■ 사회적 성과 관점

- 대내적: 사회적 미션의 관리, 근로자 고용의 질, 기업 내부운영의 민주성 등
- 대외적: 창출된 수익의 사회적 활용,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 조성 노력 등

### ■ 경제적 성과 관점

- 대내적으로 얼마나 조직의 경제적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는지 등이 포함
- 대외적으로 얼마나 국가경제에 기여하는지 등이 포함(매출액, 영업이익 등)

### ■ 혁신 성과 관점

- 기업 운영과정의 혁신, 제품 자체나 운영방식 등 사업의 전 영역에서 걸쳐서 발생하는 혁신성

#### ※ 각 관점별 설정근거

- IRIS(사회영향투자보고서 및 투자기준)의 5대 카테고리를 참조하여 사회적 영향과 경제적 성과를 종합적으로 측정하기 위해 범주를 구분
  - \* 사회적 성과 : 조직 미션, 사업 활동, 조직 운영
  - \* 경제적 성과 : 재정 성과
  - \* 혁신 성과 : 기업 혁신

## ● 각 관점별 측정내용

| 관 점    | 주요 측정내용  |
|--------|--|
| 사회적 성과 | 조직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각종 기제를 설정하고 실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측정 |
| 경제적 성과 | 조직이 효율적으로 인적·물적 자원을 투입하여 나타난 사업활동의 경제적인 결과를 측정   |
| 혁신 성과  | 기업 활동에서 제품 및 서비스의 혁신성이 제대로 발현되고 있는지 여부를 측정       |

## ● 지표의 특성

- ① 범용적으로 활용 가능: 지표의 활용 목적에 따라 사회적 성과, 경제적 성과, 혁신 성과 3대 관점별로 사업특성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이 가능하도록 구성
- ② 사회적기업 특성 반영: 비계량지표의 도입으로 계량 지표만으로 측정할 수 없는 사회적기업을 정성적·종합적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특성을 반영
  - 또한 비계량지표 평가 시 구조화된 판단요소를 제시하고, 해당되는 충족 요소를 참조하여 비계량 내 계량적 요소를 도입하여 객관적 평가를 도모
    - \* 해당지표: 3.사업활동의 사회적 가치 지향성, 6.사회적 환원 노력도, 14.혁신노력도
- ③ 기업규모 및 업종별 특성 반영: 각 지표별 측정 시, 사회적기업 동일업종의 전체 수치와 비교를 통해 참여기업의 수준을 객관적인 분석 데이터로 측정
  - \* 해당지표: 8.근로자 임금수준, 10.고용성과, 11.매출성과, 12. 영업성과, 13. 노동생산성

## ● 측정결과의 종합

- 종합점수 등급: 각 지표별 점수를 합산한 종합점수는 4단계 등급으로 산출

| 종합점수                          | 등급 정의  |
|-------------------------------|--|
| <b>탁월</b><br>90점 이상           | 모든 사업영역에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추고 효과적인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매우 높은 성과를 달성하고 있는 수준 |
| <b>우수</b><br>80점 이상<br>90점 미만 | 대부분 사업영역에서 사회적 가치실현을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추고 효과적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높은 성과를 달성하고 있는 수준     |
| <b>보통</b><br>70점 이상<br>80점 미만 | 일부 사업영역에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시스템을 갖추고 활동이 추진되고 있지만, 사회적 성과는 다소 부족한 수준               |
| <b>미흡</b><br>70점 미만           | 일부 사업영역에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시스템을 갖추지 못하고 활동이 미비하여 개선을 위한 변화시도가 필요한 수준              |

## 03

## 역할 및 측정절차

### 주체별 역할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하 진흥원)
  - 사회적 가치지표(SVI) 활용 매뉴얼 제작 및 교육 지원
  - 사회적 가치측정 평가단 구성·운영, 최종 평가결과 확정
  - 사회적 가치측정 결과DB 구축 및 분석
  - 사회적 가치지표 정교화 및 개선·보완 작업
- 측정기관(권역별 지원기관 및 중간지원조직 등)
  - 사회적 가치지표 교육(참여기업 대상)
  - 사회적 가치측정 참여기업 현장실사 및 사회적 가치측정
  - 참여기업별 측정결과 구축 및 진흥원 제출
- 참여기업
  - 지표 활용 지원사업 또는 사회적 가치측정 모집공고 참여 신청
  - 사회적 가치측정 신청서 작성 및 측정기관 제출
  - 사회적 가치측정 측정기관(또는 진흥원) 현장실사 응대
  - 신청서 기재내용에 따른 증빙자료 준비 및 현장실사 후 추가 증빙자료 제출

### 측정 절차

| 절차 | 주관기관                      | 내용  |
|----|---------------------------|---|
| ①  | 매뉴얼<br>제작 · 배포            | 진흥원<br>·활용매뉴얼 제작 및 측정기관 등 배포·교육   |
| ②  | 지표 안내 및<br>교육             | 진흥원,<br>측정기관<br>·지표 측정절차·방법 등 전체교육(진흥원→측정기관)<br>·신청서 작성방법 등 교육(측정기관→기업)   |
| ③  | 신청서<br>작성·제출 및<br>현장실사 준비 | 참여기업<br>·지표가 활용된 외부 지원사업(또는 진흥원 사회적 가치측정<br>사업)등에 참여 신청<br>·사회적 가치측정 신청서 작성 및 제출<br>·신청서 기재내용의 증빙자료 구비 등 현장실사 준비      |
| ④  | 사회적<br>가치측정<br>(현장실사)     | 측정기관<br>(or진흥원)<br>·기업이 작성하고 제출한 신청서 사전검토 후 현장실사 준비<br>(면담 일정조율 등)<br>·참여기업 현장실사 및 담당자 면담(증빙자료 확인)을 통한 사회적<br>가치측정 실시 |
| ⑤  | 측정<br>결과보고서<br>작성 및 제출    | 측정기관<br>(or진흥원)<br>·(측정기관) 현장실사 후 측정 결과보고서 작성 및 제출<br>·(진흥원) 측정기관이 제출한 측정 결과보고서 검토                                    |
| ⑥  | 평가단 운영                    | 진흥원<br>·내·외부 전문평가위원 구성(현장·학계 등 전문가)<br>·평가단에 의한 측정결과보고서 최종평가 및 점수 확정  |

## 04 \ 기타

### 기타 사항

- 사회적 가치측정 대상, 측정일정, 측정내용은 활용기관의 정책방향 및 사업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적용
- 제시한 지표 내용 및 측정방법, 절차 등은 매년 지속 개선·보완 예정
- 부록 ‘업종별 측정기준표’는 한국표준산업분류 및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에 따라 매년 업데이트하여 제공
- 개선·보완 된 최신 활용매뉴얼 자료는 매년 버전별로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홈페이지 (<http://www.socialenterprise.or.kr>)에 제공
- 자발적인 사회적 가치측정을 원하는 기업을 위해 자사의 사회적 가치 창출 현 수준을 객관적으로 자가 진단할 수 있는 ‘SE 자가진단 KIT’를 진흥원 홈페이지(<http://www.socialenterprise.or.kr>)에 제공
- 본 지표 및 매뉴얼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진흥원과 사전협의 후에 사용 가능  
(담당부서: 인증평가팀(031-697-7720, 7724))

# 2

## 참여기업 매뉴얼

Participant Manual

---

- 01 총괄표
- 02 지표별 작성방법
- 03 사회적 가치측정 신청서 작성양식

## 01

## 총괄표

| 관점             | 범주            | 영역                       | 측정지표                | 배점  |
|----------------|---------------|--------------------------|---------------------|-----|
| 사회적 성과<br>(60) | 조직 미션<br>(7)  | 사회적 미션<br>(7)            | 1. 사회적 가치 추구 여부     | 2   |
|                |               |                          | 2. 사회적성과 관리체계 구축여부  | 5   |
|                | 사업 활동<br>(33) | 주사업활동의<br>사회적 가치<br>(15) | 3. 사업활동의 사회적 가치 지향성 | 15  |
|                |               | 사회적경제<br>생태계 구축<br>(8)   | 4. 사회적경제기업과의 협력 수준  | 5   |
|                |               |                          | 5. 지역사회와의 협력 수준     | 5   |
|                |               | 사회목적 재투자<br>(10)         | 6. 사회적 환원 노력도       | 10  |
|                | 조직 운영<br>(20) | 운영의 민주성<br>(5)           | 7. 참여적 의사결정 비율      | 5   |
|                |               | 근로자 지향성<br>(15)          | 8. 근로자 임금수준         | 8   |
|                |               |                          | 9. 근로자 역량강화 노력      | 5   |
| 경제적 성과<br>(30) | 재정 성과<br>(30) | 고용창출 및 재정성과<br>(25)      | 10. 고용성과            | 10  |
|                |               |                          | 11. 매출성과            | 10  |
|                |               |                          | 12. 영업성과            | 5   |
|                |               | 노동성과<br>(5)              | 13. 노동생산성           | 5   |
| 혁신 성과<br>(10)  | 기업 혁신<br>(10) | 혁신성<br>(10)              | 14. 혁신노력도           | 10  |
| 계              |               | 14개 지표                   |                     | 100 |

※ 참여기업 작성 기준: 2018년도의 추진활동 및 실적으로 기재(증빙)

## 02 \ 지표별 작성방법

### 지표1 사회적 가치 추구 여부(배점:2점)

#### 지표 정의

- 기업이 명시적으로 사회적 가치추구 여부를 선언하고 이를 통해 사회적 가치 지향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지 측정하는 지표입니다.
  - 조직 내 경영목표를 설정하고 달성여부를 평가하듯 사회적 가치(성과)도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또한 조직이 설정한 사회적 목표에 대해서 내부 구성원들에게 공유하고 내재화함으로써 조직이 추구하는 사회적 가치를 더 잘 이해하고 실행 가능한 방향으로 참여를 촉진시킵니다.

#### 측정 방법

- 신청서 양식에 따라 해당 내용을 기재합니다. 미션비전에는 조직이 추구하는 사회적 가치 및 수혜대상 등이 포함되어 기재하도록 합니다.

#### [ 신청서 양식 ]

미션

비전

추진전략

- ① 미션 : 기업이 궁극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최종 목적을 의미
- ② 비전 : 기업이 미션을 달성하기 위해 중, 장기적으로 세운 목표를 의미
- ③ 추진전략 :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단기적 수행전략을 의미
- ④ 사회적 가치 명시자료 : 사회적 가치가 내포된 미션 및 비전이 명시적으로 드러난 문서를 뜻하며, 정관 혹은 미션선언문, 비전선언문 등이 해당

## 등급 기준

|                |  |
|----------------|--|
| 미션             | 양질의 사회서비스와 지속가능한 일자리 기회를 제공하여 사회적 약자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   |
| 비전             | 2020년 내에 간병 및 요양서비스 산업을 선도하는 기관으로 도약하고 근로자의 60% 이상을 취약계층으로 고용한다.   |
| 추진전략           | 1. 간병 서비스 매뉴얼 개발 및 보급<br>2. 취약계층 고용활성화를 위한 지역사회 연계 추진<br>3. 근로자의 전문성 강화  |
| 사회적 목적<br>명시자료 | <input type="checkbox"/> 정관 <input type="checkbox"/> 미션선언문 <input type="checkbox"/> 비전선언문 <input type="checkbox"/> 기타 자료<br><small>* 해당항목에 체크박스 표시▣(중복체크 가능)</small> |

※ 참고서식: [제3장] 1번 미션선언문 및 2번 비전선언문 참조

## 증빙 서류

- 다음의 증빙자료를 선택하여 구비합니다.
  - 정관(사회적 목적)
  - 미션선언문·비전선언문
  - 기업의 사회적 목적 및 미션·비전이 명시된 자체적인 문서 또는 홈페이지

## **지표2** 사회적 성과 관리체계 구축(배점:5점)

### 지표 정의

- 기업이 사회적 가치창출을 위해 계획-실행-점검-피드백 등 일련의 활동을 관리·평가·공유할 수 있는 종합적인 체계를 측정하는 지표입니다.
  - 조직 내 경영목표를 설정하고 달성여부를 평가하듯 사회적 가치(성과)도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또한 조직이 설정한 사회적 목표에 대해서 내부 구성원들에게 공유하고 내재화함으로써 조직이 추구하는 사회적 가치를 더 잘 이해하고 실행 가능한 방향으로 참여를 촉진시킵니다.

### 측정 방법

- 사회적 성과 관리체계는 사회적 성과를 관리하고 제고시킬 수 있는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의미 합니다.
- 내용으로 측정기준(목표), 담당인력(담당자), 평가보고서(활동내용), 평가위원회(평가), 사내공유 (확산)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판단요소에 따라 기재합니다.

[ 신청서 양식 ]

| 판단요소         | 구축여부  | 근거 |
|--------------|-------|----|
| 측정 기준        | 유 / 무 |    |
| 담당 인력        | 유 / 무 |    |
| 성과보고서        | 유 / 무 |    |
| 평가위원회        | 유 / 무 |    |
| 평가결과<br>사내공유 | 유 / 무 |    |

#### ※ 판단요소별 기준 및 내용

|              |                      |   |
|--------------|----------------------|---|
| 측정기준         | 사회적 성과목표 및 등급기준 설정유무 | 기업특성에 따른 사회적 성과목표가 설정되어 있고, 각 목표별 등급기준을 설정하여 기재       |
| 담당인력         | 담당부서 또는 담당인력 유무      | 사회적 성과관리 담당인력이 있고, 업무분장표 상 담당부서 및 담당자 명시              |
| 성과<br>보고서    | 추진활동 및 등급결과 내용       | 측정기준(목표)에 따른 사회적 성과 추진활동 내역 및 해당 목표지표의 등급 결과를 기재      |
| 평가<br>위원회    | 평가위원회 운영 및 평가결과      | 사회적 성과 추진활동에 대해 평가 및 피드백을 제공하는 내·외부평가위원 위촉내역과 평가의견 기재 |
| 평가결과<br>사내공유 | 평가결과<br>사내공유 유무      | 인트라넷, 메일공지 등을 활용한 임직원 대상의 사회적 성과 평가결과 공유 내역 기재        |

- 판단요소별 작성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측정기준: 기업이 추구하는 사회적 미션을 달성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사회적 성과 목표가 존재하는지 확인하는 것으로, 업종 또는 특성에 맞게 자체적으로 지표 및 등급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 담당인력: 기업의 사회적 성과를 관리하는 담당부서 및 담당자를 의미합니다. 기업은 경제적 성과와 마찬가지로 사회적 성과에 대해서도 계획을 수립하고 결과를 측정·보고하는 담당 인력을 지정해 관리하고 있어야 합니다.
  - 성과보고서: 기업이 자체적으로 설정한 측정기준에 따라 실제 활동한 내역과 달성한 실적을 정리한 보고서를 의미합니다.(또는 외부 전문기관의 사회성과 평가를 통해 도출된 보고서\*도 인정됩니다.)  
\* (예시) 자율경영공시, 사회성과인센티브, 임팩트보고서, 사회적회계, 지속가능보고서 등
  - 평가위원회: 기업의 성과보고서에 대하여 평가하는 조직의 구성 유·무로 판단하며 평가위원에 대한 별도의 자격사항\*은 없으나, 내부인사(이사 및 직원 등) 외에 외부인사도 포함하여 객관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지향합니다.  
\* (자격사항) 운영위원 또는 사내이사, 근로자 대표 등이 겸직 가능
  - 평가결과 사내공유: 기업의 사회적 성과에 대해 평가위원회를 거친 평가결과를 내부 임직원에게 공유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를 통해 기업의 사회적 미션을 조직 구성원 모두가 인지하고 함양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작성사례

| 판단요소         | 구축여부 | 근거   |
|--------------|------|--|
| 측정기준         | 유    | 제시된 사회적 성과관리보고서(제3장 양식참조) 항목에 따른 목표 및 등급설정       |
| 담당인력         | 유    | 업무분장표<br>(사회적 성과관리 담당자 및 해당업무 명시)                |
| 성과보고서        | 유    | 제시된 사회적 성과관리보고서(제3장 양식참조) 항목에 따른 활동내용 및 등급결과 기재함 |
| 평가위원회        | 유    | 평가위원 위촉(내부3인 외부1인) 및 평가의견·서명 확인                  |
| 평가결과<br>사내공유 | 유    | 인트라넷(메일)을 통한<br>전체 임직원 대상의 평가결과 공유               |

※ 참고서식: [제3장] 3번 사회적 성과관리 보고서 및 4번 위촉장 참조

## 증빙 서류

- 다음의 증빙자료를 선택하여 구비합니다.
  - 2018년도 사업계획서(또는 사업 결과보고서) 및 업무분장표
    - \* 기업의 자체양식 활용 가능하나, 1)사회적 성과목표, 2)등급기준, 3)추진활동·내용, 4)등급결과, 5)담당자(업무분장표) 등 필수포함(상기 확인불가 시 해당항목 불인정)
  - 사회적 성과관리 보고서([제3장] 양식 참조)
    - \* 사회적성과 평가위원 위촉장([제3장] 양식 참조)
  - 외부 전문기관의 사회성과 평가보고서
    - \* 외부기관(사회성과보고,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등)의 사회적성과 평가보고서 등
  - 기타 신청서에 기재한 내용을 증빙하기 위해 제출하는 자료 일체

| 판단요소        | 증빙자료 인정 범위  |
|-------------|---|
| ① 측정기준      |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측정 대상연도(2018년)의 사업계획서·결과보고 내에 사회적 성과 목표 및 등급기준 기재 여부</li><li>• 사회적 성과관리보고서 항목에 따른 사회적 성과목표·등급 기재</li><li>• 기업에서 자체적으로 수행한 사회적 성과 관리 관련자료 및 외부기관의 사회적 성과평가 등</li></ul>   |
| ② 담당인력      |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조직도, 업무분장표 등에 ‘사회적 성과관리 담당’ 명시 여부</li><li>• 사회적 성과보고서 상 담당자 기재</li></ul>  |
| ③ 성과보고서     |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측정대상 연도(2018년) 사업결과보고 내 ‘사회적 성과 추진활동’ 및 ‘등급·결과’ 기재 유무</li><li>• 사회적 성과관리 보고서 항목에 따른 ‘사회적 성과 추진활동’ 및 ‘등급·결과’ 기재</li><li>• 기업자체 사회적 성과관리, 외부기관의 사회적 성과평가 자료 등<br/>(사회성과인센티브, 임팩트보고서, 사회적회계, 지속가능보고서 등)</li></ul>  |
| ④ 평가위원회     |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사회적 성과 평가위원 위촉장</li><li>• 사회적 성과관리 보고서 항목에 따른 내·외부 평가위원의 평가의견 및 서명의 기재 유무<br/>(연 1회 이상의 평가실시 내역 확인)</li><li>• 외부전문 사회적 성과 평가기관에 의해 평가를 받았을 시, 평가위원회를 갖추고 이를 수행한 것으로 인정</li><li>• 이사회, 운영위원회 등 내·외부인사가 포함된 조직운영 의사결정기구에서 사회적성과에 대한 평가역할을 수행하고, 해당 내용을 회의록, 결과보고 등의 문서를 통해 확인가능 할 시 이를 인정</li></ul> |
| ⑤ 평가결과 사내공유 |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기업의 사회적 성과 추진활동에 대한 내·외부인사의 평가까지 수행한 사회적 성과 평가결과 등을 내부 임직원 또는 외부로의 공유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일체를 포괄적으로 인정<ul style="list-style-type: none"><li>* 홈페이지 게재, 인트라넷 공유, 사내 게시판 부착 등</li></ul></li></ul>   |



## 지표3 사업 활동의 사회적 가치 지향성(배점:15점)

### 지표 정의

- 사회적기업의 모든 활동은 우선적으로 사회적 가치를 지향해야하며, 이를 확인하기 위해 사업 활동에서의 사회적 가치 지향성을 확인하는 지표입니다.

### 작성 방법

- 다음의 판단기준별 착안사항을 참고하여 사회적 가치측정 신청서 작성양식에 따라 해당되는 내용을 작성합니다.
- 착안사항의 ①번, ②번 / ③번 착안사항은 기업에 따라 선택하여 기재합니다.

| 판단기준               | 착안사항 및 측정방법   |
|--------------------|---|
| 내부운영의 사회가치<br>(5점) | <p>※ 인증유형별 ①, ② 또는 ③ 중 해당되는 항목만 선택 기재</p>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①,②번 해당기업: 취약계층 고용의무 있는 기업<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일자리제공형, 지역사회공헌형(가형), 혼합형 해당</li></ul></li><li>- ③번 해당기업: 취약계층 고용의무 없는 기업<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사회서비스 제공형, 지역사회공헌형(나, 다형), 기타형</li></ul></li></ul> <p>① <b>취약계층 고용 수준:</b> 기업의 취약계층 근로자 고용비율 기재</p>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증빙자료: 2018.12월 고용보험내역 또는 근로자명부상 취약계층 수<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산식: 기업의 총 유급근로자 중 취약계층 고용인원의 비율</li></ul></li></ul> <p>② <b>취약계층 임금 수준:</b> 기업의 취약계층 근로자 임금수준 기재</p>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증빙자료: 2018.12월 직원 임금대장 상 취약계층 평균임금<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산식: 취약계층 근로자 임금(시급)의 평균 값</li></ul></li></ul> <p>③ <b>사회적 가치 실현노력:</b> 취약계층 고용·임금수준 외 임직원 대상 내부운영상 사회적 가치 실현 수준(임직원 복지 등) 기재</p> <p>④ <b>괜찮은 일자리:</b> ‘괜찮은 일자리’ 3가지 조건의 충족여부 기재</p>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증빙자료: 직원 근로계약서(임금, 근로시간, 계약기간 확인)<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조건: 1)최저임금 이상 지급, 2)주15시간 이상근무,<br/>3)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체결유무</li></ul></li></ul> <p>⑤ <b>근로자 보건 및 안전:</b> 근로자 보건·안전 위한 노력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증빙자료: 기업 무료건강검진, 정기적 보건·위생·안전교육내역 등</li></ul> <p>⑥ <b>고용의 질:</b> 기업 고용정책 및 근로환경 개선 노력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증빙자료: 취약계층 차별금지 조항, 일·생활균형정책, 유연근무제 도입, 작업환경 개선 등 고용의 질 제고를 위한 노력 유무 확인</li></ul> |

| 판단기준  | 착안사항 및 측정방법   |    |              |              |   |                |   |
|---|---|----|--------------|--------------|---|----------------|---|
| <b>외부 운영<br/>(제품·서비스 및 이용자)의 사회가치 (10점)</b> | <p><b>【 기업 작성예시 】</b></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background-color: #d9c8e0; text-align: center;">구분</th><th style="background-color: #d9c8e0; text-align: center;">생산·판매과정 및 결과</th></tr> </thead> <tbody> <tr> <td style="vertical-align: top;">제품·서비스의 사회가치</td><td style="vertical-align: top;">참고사례: 공정무역 커피→제3세계 어린이 인권보호, 장애인 작업장 생산물품→취약계층 고용창출 등</td></tr> <tr> <td style="vertical-align: top;">이용자(수혜자)의 사회가치</td><td style="vertical-align: top;">참고사례: 돌봄·가사서비스→수혜자(이용자)의 삶의 질 개선(독거노인, 한부모 가정아동, 맞벌이부부 등)</td></tr> </tbody> </table> <p>○ 주 사업영역의 제품·서비스를 생산, 판매하는 과정 및 결과에서 제품·서비스의 사회적 가치반영 수준과 이용자(수혜자)의 사회적 가치실현 수준을 기재<br/>     - 생산제품·서비스의 기획·개발·생산·유통·판매·관리에 이르는 과정 상 어떤 사회적 가치를 반영하고 있는지 내용 기재<br/>     - 동일 과정상 제품 및 서비스를 이용자(구매자, 수혜자, 참여자 등)가 사용함으로써 어떤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있는지 내용 기재</p> | 구분 | 생산·판매과정 및 결과 | 제품·서비스의 사회가치 | 참고사례: 공정무역 커피→제3세계 어린이 인권보호, 장애인 작업장 생산물품→취약계층 고용창출 등 | 이용자(수혜자)의 사회가치 | 참고사례: 돌봄·가사서비스→수혜자(이용자)의 삶의 질 개선(독거노인, 한부모 가정아동, 맞벌이부부 등) |
| 구분  | 생산·판매과정 및 결과  |    |              |              |   |                |   |
| 제품·서비스의 사회가치                                | 참고사례: 공정무역 커피→제3세계 어린이 인권보호, 장애인 작업장 생산물품→취약계층 고용창출 등   |    |              |              |   |                |   |
| 이용자(수혜자)의 사회가치                              | 참고사례: 돌봄·가사서비스→수혜자(이용자)의 삶의 질 개선(독거노인, 한부모 가정아동, 맞벌이부부 등)   |    |              |              |   |                |   |

### 작성사례

| 구 분                | 내용  |
|--------------------|---|
| <b>내부운영의 사회 가치</b> | <p><b>1. 기업별 선택 작성항목</b></p> <p>1-1) 취약계층 의무고용 사업장인 경우</p> <p>① 취약계층 고용비율(2018년 12월 기준)<br/>         (예시) 2018년 12월 기준 총 유급근로자 10명 중 취약계층 인원은 7명. 따라서, 취약계층 고용비율 = 70%</p> <p>② 취약계층 평균시급(2018년 12월 기준)<br/>         (예시) -취약계층 7명 총 급여 = 10,092,000원, 총 근무시간 299시간<br/>         -취약계층 7명 평균시급 = <math>10,092,000 \div 299 = 33,753\text{원}</math></p> <p>1-2) 취약계층 의무고용 사업장이 아닌 경우</p> <p>③ 임직원 대상 사회적 가치 실현 노력</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10px;"> <b>작성 예시 1.</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당사의 사회적 미션은 원예활동을 통해 자연과 함께하는 사회 추구로서 원예치료용 화분을 개발해 제공하고 있음. 어르신 장애인을 위한 원예치료서비스를 위하여 전문가 2명을 채용도록 규정하고 있음.</li> <li>- 2018년 12월 현재 해당 전문가 1명이 채용되어 근무하고 있음.</li> </ul> </div> |

| 구 분 | 내용   |
|-----|--|
|     | <p><b>작성 예시 2.</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당사의 사회적 미션은 창작공연을 통한 사회문제 해결로, 공연뮤지컬의 50%이상은 반드시 창작 작품을 공연하도록 목표를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지속적인 고용창출 및 유지 노력을 하고 있음.</li> <li>- 2018년 구성원(단원 포함) 노력으로 58%의 창작 작품을 공연하였으며, 환경 이슈에 대한 작품 공연이 주를 이룸. 이와 더불어 단원을 대상으로 개인별 자발적 환경 보전 실천 계획을 수립하여 실천도록 하였으며, 개인별 실천성과는 극단 단원 연말 시상에 반영하여 환경 보전의 실천의식을 고취시키고 있음.</li> </ul> |
|     | <p><b>작성 예시 3.</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당사는 발달장애인 직업재활의 선도기업이 되는 것을 목표로 발달 장애인 대상으로 연주 공연을 기획하고 교육을 실행하고 있음.</li> <li>- 발달장애인 연주자를 위한 별도의 음습실을 마련하고 자체 레슨을 실시하고 있음. 주4일 근무 및 추가연주(근무)수당을 제공함.</li> </ul>   |

※ 위 내용은 단순예시이며, 형식·분량은 자유롭게 요약하여 기재 가능

## 2. 전체기업 공통 작성항목

### ④ 괜찮은 일자리

(예시) 전 직원이 정규직으로 주 40시간 근무하고 월 임금을 최소 200만 원 이상 지급하는 기업의 경우(초과근무 제외)

| 구 分               | 내 용  |
|-------------------|--|
| 최저임금 이상 지급        | <input checked="" type="checkbox"/> 유 <input type="checkbox"/> 무<br>(시급 8천원 이상 지급)   |
| 주 15시간 이상 근무      | <input checked="" type="checkbox"/> 유 <input type="checkbox"/> 무<br>(주 40시간 근무)      |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체결 | <input checked="" type="checkbox"/> 유 <input type="checkbox"/> 무<br>(전 직원 정규직 채용·운영) |

※ 각 항목에 따른 증빙서류는 현장실사 시 별도 제출

### ⑤ 근로자 보건 및 안전

- 업무 중 사고에 대비한 배상책임보험 직장 가입 시행
- 근로자의 보건안전을 위해 건강검진을 매년 실시
-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 감정노동자를 위한 업무고충 상담 지원

### ⑥ 고용의 질 : 고용 정책 및 복지 등 근로 환경

- 여성 및 취약계층에 대한 채용, 승진 시 차별금지
- 사내 동호회 지원, 사내 여직원 휴게실 지원
- 복지포인트 지급 및 근로자 교육비 일부 지원

| 구 분                                | 내용  |
|------------------------------------|---|
| 외부 운영<br>(제품·서비스<br>및 이용자)<br>사회가치 | <p><b>작성 예시 4.</b></p> <p>1) 제품 개발 활동<br/>-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한 제품을 지속적으로 개발</p> <p>2) 생산/제조 활동<br/>- 친환경 식자재를 사용하고 지역 내 농수축산물 사용비율을 확대<br/>-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을 통한 원재료 구매율을 높이고 있음<br/>- 원재료 미사용량 및 폐기량을 줄이기 위해 최소 적정재고만 보유하는 등 재고관리 체계를 구축<br/>- 생산부에 근무하는 장애인의 안전하고 지속적 근무환경 조성 위해 장애유형별 적합한 작업과정을 별도로 구분배정하고 관리·개선 중</p> <p>3) 제품 판매/유통 활동<br/>- 제품 일부를 취약계층(저소득층 학생)에게 판매하되 일반 판매 가격의 80% 수준으로 책정해 판매하고 있음<br/>- 자원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고객 안내를 통해 배송포장재를 수거하여 재활용하고 있음.</p> <p>4) 이용자의 사회가치(구매자, 수혜자, 참여자 등)</p> <p>가. 구매자<br/>- 친환경 식자재 활용을 통해 이용자들에게 건강한 먹거리 제공<br/>- 농산물 생산과 관리부서(8개의 직영농가)를 독립적으로 구축하여 중간유통과정의 제거로 저렴한 가격의 식자재를 고객에게 제공<br/>- 버려지는 배송포장재(포장박스/팩 등)를 고객으로부터 수거하여 재활용하는 제도를 운영하여 고객도 환경보호에 동참하는 사회가치</p> <p>나. 수혜자<br/>- 저소득 취약계층 가정에 무상으로 식자재 제공 (매주 1회)</p> <p>다. 참여자<br/>- 사회적기업 간 공동유통사업을 통해 사회적 기업과의 협력 관계망 구축 및 판로 공유</p> <p>※ 위 내용은 단순예시이며, 형식·분량은 자유롭게 요약하여 기재 가능</p> |

## 증빙 서류

- 다음의 증빙자료를 선택하여 구비합니다.
  - 2018년 12월 기준 고용보험 내역(또는 동일기준 유급근로자 명부)
  - 2018년 12월 임금대장 및 직원 근로계약서(괜찮은 일자리 확인자료)
  - 근로자 보건 및 안전 관련 증빙 / 고용 정책 및 복지 등 관련 증빙
  - 기타 신청서에 기재한 내용을 증빙하기 위해 제출하는 자료 일체

## 지표4 사회적경제기업과의 협력 수준(배점:5점)

### 지표 정의

- 사회적 가치를 지향하는 사회적경제기업(인증 및 예비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협동조합) 및 협의체 간 상호협력 활동수준을 확인하는 지표입니다.

### 작성 방법

- 신청서 양식에 따라 사회적경제기업 및 협의체 간 협력활동 내용을 기재합니다.

#### 【신청서 양식】

| 협력기관 | 협력 활동 | 횟 수 |
|------|-------|-----|
|      |       |     |
|      |       |     |
|      |       |     |
|      |       |     |

- 협력기관에 해당되는 사회적경제기업은 인증·예비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을 의미합니다.(협의체는 사회적경제기업 네트워크)
- 협력활동의 범위는 사회적경제기업 간 공동프로젝트, MOU체결을 통한 사업협력 등 기업의 주 사업영역과 관련된 협력활동을 기재합니다.  
(봉사활동, 재능기부 등은 '6번 지표'의 기타(비금전적) 조직역량활용에 해당됩니다.)
- 또한 1회성의 단발성 활동은 지양하고 지속적이고 정기적 협력활동을 지향합니다.  
(최소 연 1회 이상, 활동내역 증빙자료 없을 시 불인정)

#### ※ 참고사항

- 활동내역의 증빙자료는 MOU체결문서, 협의회(네트워크) 회원명부 및 회비납부 내역, 공동 프로젝트 보고서 등 사회적경제기업 및 협의체 간 협력활동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일체 가 해당됩니다.
- 사회적경제기업 및 협의체 외의 단체인 공공기관·민간기업 등과의 협력활동은 '지표 5'에 포함되고 본 지표에서는 제외됩니다.
- 진흥원 및 권역별 지원기관, 광역·기초단체의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등 중간지원조직은 사회적경제기업의 지원 업무가 본업이므로 협력기관에서 제외

## 작성 사례

| 협력기관          | 협력활동                               | 횟수     |
|---------------|------------------------------------|--------|
| ○○○사회적기업      | 공동판매장 운영을 위한 협동프로젝트 수행             | 수시     |
| □□협동조합        | 원자재 구매협약 체결                        | 월 1회   |
| △△지역 사회적기업협의회 | △△지역 사회적기업 협의회 회원사 활동              | 연 1회   |
| ☆☆업종 네트워크     | ☆☆분야 표준화 및 브랜드화 등 관련 의제 발굴 및 정책 제안 | 분기별 1회 |

## 증빙 자료

- 다음의 증빙자료를 선택하여 구비합니다.
  - 사회적 경제기업 및 협의체 간 협력활동 관련 MOU 문건
  - 사회적 경제기업 및 협의체 간 협력활동 보고서, 보도자료, 회의록, 활동사진 등
  - 협의체 회원사 명단, 협의체 회의 참석공문, 회비 납부내역 등
  - 기타 신청서에 기재한 내용을 증빙하기 위해 제출하는 자료 일체



## 지표5 지역사회와의 협력 수준(배점:5점)

### 지표 정의

- 사회적 가치를 지향하는 지역사회의 기관(공공기관 및 민간기업 등)과의 협력 활동수준을 확인하는 지표입니다.

### 작성 방법

- 신청서 양식에 따라 공공기관 민간기업 간 협력활동 내용을 기재합니다.

#### 【신청서 양식】

| 협력기관 | 협력 활동 | 횟 수 |
|------|-------|-----|
|      |       |     |
|      |       |     |
|      |       |     |
|      |       |     |
|      |       |     |

- 협력기관에 해당되는 기관은 자치단체(기초·광역),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 사회적경제기업 외의 모든 단체를 의미합니다.
- 협력활동의 범위는 지역사회 기관 간 공동프로젝트, MOU체결을 통한 사업협력 등 기업의 주 사업영역과 관련된 협력활동을 기재합니다.  
(봉사활동, 재능기부 등은 '6번 지표'의 기타(비금전적) 조직역량활용에 해당됩니다.)
- 또한 1회성의 단발성 활동은 지양하고 지속적이고 정기적 협력활동을 지향합니다.  
(최소 연 1회 이상, 활동내역 증빙자료 없을 시 불인정)

#### ※ 참고사항

- 지역사회는 기업의 소재 지역에 국한되는 것이 아닌 전국범위를 의미합니다.
- 활동내역의 증빙자료는 MOU체결문서(협약서), 계약서, 공동프로젝트 보고서 등 지역사회의 기관 간 협력활동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일체가 해당됩니다.
- 공공기관·민간기업 등의 지역사회 기관 외 사회적경제기업 및 협의체와의 협력활동은 '지표 4'에 포함되고 본 지표에서는 제외됩니다.

## 작성 사례

| 협력기관    | 협력활동   | 횟수   |
|---------|--|------|
| OO대학교   | 인재 양성과 기술, 경영 혁신 도모 산학 협력 (관련 전공 인원 교류 및 교육) | 연 1회 |
| OO구청    | 도시 농업 운영 프로그램 사업                             | 연 1회 |
| OO 어린이집 | 무료 영유아발달 선별 검사 및 부모교육 프로그램 운영                | 연 2회 |

## 증빙 자료

- 다음의 증빙자료를 선택하여 구비합니다.
  - 지역사회 협력 인정기관과 맺은 MOU, 계약서 및 거래내역서
  - 지역사회 협력 인정기관과의 협력활동 보고서, 보도자료, 회의록, 활동사진
  - 기타 신청서에 기재한 내용을 증빙하기 위해 제출하는 자료 일체

## 지표6 사회적 환원 노력도(배점:10점)

### 지표 정의

- 사회적기업의 모든 활동은 우선적으로 사회적 가치를 지향해야 하며, 이러한 활동을 금전적 또는 비금전적으로 구분하여 사회적 환원 노력도를 확인하는 지표입니다.

### 작성 방법

- 다음의 판단기준별 착안사항을 참고하여 사회적 가치측정 신청서 작성양식에 따라 해당되는 내용을 작성합니다.

| 판단기준                         | 착안 사항  |
|------------------------------|--|
| 조직<br>내부운영을<br>위한 수익의<br>활용  | <p>① <b>부가적인 일자리 창출</b>: 측정대상연도(2018년)와 전년도의 유급근로자 총원과 비교하여 증가 유무를 기재<br/>- 증빙자료: 2017, 18년도 12월 고용보험내역(또는 유급근로자 명부)</p> <p>② <b>구성원 성과급</b>: 성과급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은 인센티브 성격의 구성원 금전지급 내역을 의미하며, 성과급 지급 유무를 기재<br/>- 증빙자료: 2018년도 직원 임금대장(또는 성과급 지급내역 자료)<br/>* 상여금, 워크숍 비용, 명절선물 등의 직접지급 외 내역은 지양</p> <p>③ <b>교육훈련비</b>: 직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비 지원 내역 기재<br/>- 증빙자료: 직원 대상 교육비(금전) 지원내역 증빙자료 일체</p> <p>④ <b>시설투자비</b>: 근로환경개선 등을 위한 시설비 투자 내역 기재<br/>- 증빙자료: 금전적 시설비 투자 내역 증빙자료 일체</p> |
| 조직<br>외부활동을<br>위한 수익의<br>활용  | <p>① <b>지역사회 재투자</b>: 기업이 지역사회 기관을 대상으로 금전적인 투자·후원·기부한 금액을 의미하며, 있을 경우 해당내용을 기재<br/>- 증빙자료: 기업의 지역사회 재투자 내역 증빙자료 일체(2018년 내)</p> <p>② <b>사회서비스 제공</b>: 기업이 사회서비스를 제공한 내역을 금액으로 환산한 것을 의미하며, 있을 경우 해당내용을 기재<br/>- 증빙자료: 기업의 사회서비스 제공 내역 증빙자료 일체(2018년 내)</p>  |
| 기타<br>(비금전적)<br>조직의 역량<br>활용 | ○ 주 사업영역 외에 조직의 인력·시간 등을 활용한 비금전적 자원(봉사활동, 재능기부 등)을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투입한 내역을 기재<br>- 증빙자료: 기업의 비금전적 역량활용 내역 증빙자료 일체(2018년 내)  |

## 작성 사례

| 구 분                          | 내 용  |
|------------------------------|--|
| 조직<br>내부운영을<br>위한 수익의<br>활용  | <p>① <b>부가적인 일자리 창출</b><br/>- 2017년(12월: 10명 → 2018년(12월) 13명 / 총 3명 증가.</p> <p>② <b>구성원 성과급:</b> 18년 우수직원(2명) 선정, 총 200만원 성과급 지급</p> <p>③ <b>교육훈련비</b><br/>- 직원 역량 강화를 위해 직무관련 자격증 취득 시 인당 20만원 교육비 환급 하는 등 총 200만원의 교육훈련비 지출.</p> <p>④ <b>시설투자비:</b> 직원들의 피로도 경감을 위해 복지차원으로 노후된 직원휴게실 리모델링 및 각종 설비 구매(총 1,300만원)</p> |
| 조직<br>외부활동을<br>위한 수익의<br>활용  | <p>(지역사회 재투자) 지역 청소년단체(30명)에 총 1,000만원 현금 기부</p> <p>(사회서비스 제공) 다문화 가정 산모(8명)에 보육서비스를 5개월 간 20% 저렴하게 제공(환산금액: 80만원)</p>   |
| 기타<br>(비금전적)<br>조직의 역량<br>활용 | 지역주민 창업을 위한 무료 창업교육 및 마케팅 노하우 특강(대표), 지진피해지역 구호활동 참여(임직원 봉사활동)   |

## 증빙 자료

- 다음의 증빙자료 전체를 구비합니다.
  - 조직 내부활용: 2017년, 2018년(12월 기준) 고용보험내역, 2018년 12월 기준 임금대장, 2018년 직원대상 교육훈련비 지원내역, 2018년 시설비 투자내역
  - 조직외부활용: 2018년 지역사회 재투자 금액내역, 2018년 사회서비스 제공내역
  - 기타활용: 비금전적 활동내역(활동보고, 보도자료 등 증빙가능자료 일체)
  - 기타 신청서에 기재한 내용을 증빙하기 위해 제출하는 자료 일체

## 지표7 참여적 의사결정 비율(배점:5점)

### 지표 정의

- 기업의 의사결정과정에서 근로자 인사·사외이사 등이 참여하여 내는 의견이 높을수록 운영의 민주성이 확보된다고 볼 수 있으며, 본 지표는 해당인원의 참여율을 확인하는 지표입니다.

### 측정 기준

- 신청서 양식에 따라 의사결정기구별 회의일자 및 참석인원 수를 기재합니다.

【 신청서 양식 】

| 의사결정기구 | 전체 구성원 | 회의 일자 | 사외 이사(명) | 근로자 인사(명) | 조합원 (명) | 총 참여 인원(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참가비율   |        |       |          |           |         |            |

※ 참가비율 산식: {(근로자 측 인사+사외이사+조합원) / 총 참가인원} X 100%

\*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기재하여 최종비율 산출

- 의사결정기구는 조직의 중요한 의사를 논의하고 의결하는 기구(이사회, 운영위원회)를 의미합니다.  
(주주총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참가비율은 개별회의의 비율평균이 아닌 각 항목의 모든 참가인원 수를 합한 후 합계에 대한 참가 비율로 산출합니다.
  - 각 항목의 구체적 작성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의사결정기구 : 기관 내 운영하고 있는 의사결정구조의 명칭을 기재합니다.
    - 구성원 : 해당 의사결정기구의 전체 구성원의 성명을 기재합니다.
    - 근로자 인사 : 해당 회의일자에 참여한 근로자 측 인사 수를 기재합니다.
    - 사외이사 : 해당 회의일자에 참여한 사외이사 수를 기재합니다.
    - 조합원 : 해당 회의일자에 참여한 조합원 수를 기재합니다.
    - 총 참여인원 : 해당 의사결정기구 회의에 참석한 총 인원을 기재합니다.
- \* 사내이사와 감사는 조사항목에 해당되지 않습니다.(단, 근로자 인사가 사내이사를 겸직하거나, 감사가 사외이사를 겸직하는 경우 각 항목에 포함)

## 작성 사례

| 의사 결정기구            | 전체 구성원  | 회의 일자 | 사외 이사(명) | 근로자 인사(명) | 조합원 (명) | 총 참여 인원(명) |
|--------------------|---|-------|----------|-----------|---------|------------|
| 이사회<br>or<br>운영위원회 | 〈대표이사〉<br>○○○<br>〈사외이사〉<br>○○○,<br>○○○<br>〈근로자 인사〉<br>○○○,<br>○○○ | 3.13  | 1        | 1         | -       | 5          |
|                    |   | 4.17  | 1        | 1         | -       | 6          |
|                    |   | 7.17  | 1        | 1         | -       | 5          |
|                    |   | 10.23 | 1        | 1         | -       | 6          |
| 합계                 |   | 4     | 4        | -         | 22      |            |

|      |   |
|------|---|
| 참가비율 | 36.4%<br>$\{(4 + 4) \div 22\} \times 100(\%) = 36.3636... \rightarrow 36.4\%$ |
|------|---|

## 증빙 자료

- 다음의 증빙자료를 선택하여 구비합니다.
  - 이사회 또는 운영위원회 등 의사결정기구 관련 회의록 및 참여자 명부(서명)
  - 기타 신청서에 기재한 내용을 증빙하기 위해 제출하는 자료 일체

## 지표8 근로자 임금 수준(배점:8점)

### 지표 정의

- 기업의 근로자 지향성을 판단하기 위해 근로자 임금수준을 대표지표로 보고 이를 확인하는 지표입니다.

### 작성 방법

- 신청서 양식에 따라 총 유급근로자의 평균 시급을 작성합니다.

#### 【 신청서 양식 】

(단위: 원, 시간)

|                         |    |
|-------------------------|----|
| 전체 유급근로자 총 급여(a)        | 원  |
| 전체 유급근로자 총 근무시간(b)      | 시간 |
| 근로자 평균 시급( $a \div b$ ) |    |
| 원/시간                    |    |

① 전체 유급근로자 총 급여 : 2018년 12월 기준 유급근로자 총 급여 (단위: 원)

② 전체 유급근로자 총 근무시간 : 2018년 12월 기준 유급근로자 근무시간

#### ※ 유급근로자 범위

- 고용형태와 상관없이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를 유급근로자로 인정(대표자는 제외)
- 상시 근로자 뿐 아니라 기간제 근로자, 단기간 근로자 등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고용된 자는 모두 유급근로자에 해당

① 총 급여는 2018년 12월 기준 고용보험내역, 임금대장 등을 참고하여 세전기준의 총 급여를 기재하도록 합니다.

② 총 근무시간은 직원 근로계약서 또는 기타 직원의 근무시간이 확인가능한 자료를 통해 제시된 근무시간을 기재하도록 합니다.

### 작성 사례

(단위: 원, 시간)

|                         |              |
|-------------------------|--------------|
| 전체 유급근로자 총 급여(a)        | 37,239,200 원 |
| 전체 유급근로자 총 근무시간(b)      | 3,532 시간     |
| 근로자 평균 시급( $a \div b$ ) |              |
| 10,543 원/시간             |              |

## 증빙 자료

- 다음의 증빙자료 전체를 구비합니다.
  - 2018년 12월 기준 고용보험내역 및 동일기준 유급근로자 명부
    - \* 측정대상 시점(2018년 12월)의 총 유급근로자 수를 확인할 수 있는 공식자료
  - 2018년 12월 기준 임금대장 및 근로자의 총 급여지급 자료
    - \* 측정대상 시점(2018년 12월)의 총 유급근로자 임금총액을 확인할 수 있는 공식자료
  - 근무시간표, 근로계약서 등 근로자의 총 근무시간을 확인 가능한 자료
    - \* 측정대상 시점(2018년 12월) 총 유급근로자의 총 근무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공식자료
  - 기타 신청서에 기재한 내용을 증빙하기 위해 제출하는 자료 일체

## 지표9 근로자 역량강화 노력(배점:5점)

### 지표 정의

- 근로자가 자기개발을 통해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기업이 근로자 지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으며, 따라서 이를 확인하는 지표입니다.

### 작성 방법

- 신청서 양식에 따라 교육별로 교육 내용 및 수혜자수, 교육 시간을 작성하고 1인당 교육훈련 시간 및 합계 금액을 작성합니다.

#### 【 신청서 양식 】

| 영역                  | 교육<br>교육과정명 | 전체<br>근로자 수<br>(A) | 교육<br>수혜자 수<br>(B) | 교육<br>시간<br>(C) | 1인당 교육시간<br>(D) = B*C/A |
|---------------------|-------------|--------------------|--------------------|-----------------|-------------------------|
| 법정<br>의무<br>교육<br>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계(연평균 1인당 교육시간)    |             |                    |                    |                 |                         |

- ① 법정의무교육은 기업 의무사항이므로 제외되며, 직무·사업영역과 관련성이 적은 교육의 기재는 지양합니다.

#### ※ 법정의무교육

- 성희롱예방교육, 개인정보보호법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 퇴직연금교육, 장애인인식개선교육

- ② 교육과정명: 교육과정의 내부·외부를 구분하여 작성하되, 직무 또는 사업영역과 관련이 있는 교육만 기재하도록 합니다.  
\* 내부: 경력자(선임자 등)에 의해 실시되는 교육 / 외부: 전문가 초빙·수강을 통한 교육
- ③ 전체근로자수: 2018년 12월 기준 유급근로자수(대표자 제외)로 일괄 적용
- ④ 수혜자 수: 교육훈련에 참가한 근로자 수
- ⑤ 1인당 교육시간: 근로자의 연간 교육시간 합계(B\*C)를 총 근로자 수(A)로 나누어 1인당 교육시간(D) 산출(소수점 첫째자리까지 기재)

※ 각 교육과정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제시는 필수이며, 증빙자료가 없거나 각 조사항목의 확인이 불가할 시 신청서상 기재되어 있다하더라도 불인정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 작성 사례

| 교육                  |                | 전체<br>근로자 수<br>(A) | 교육<br>수혜자 수<br>(B) | 교육<br>시간<br>(C) | 1인당 교육시간<br>(D) = B*C/A |
|---------------------|----------------|--------------------|--------------------|-----------------|-------------------------|
| 영역                  | 교육과정명          |                    |                    |                 |                         |
| 법정<br>의무<br>교육<br>외 | 내부 요양보호사 직무교육  | 20명                | 5명                 | 5H              | 1.25                    |
|                     | 외부 회계교육        | 20명                | 3명                 | 5H              | 0.75                    |
|                     | 내부교육(노인성 치매관련) | 20명                | 10명                | 5H              | 2.5                     |
|                     | 외부 간병서비스 교육    | 20명                | 15명                | 5H              | 3.75                    |
| 합계(연평균 1인당 교육시간)    |                |                    |                    |                 | 8.25                    |

## 증빙 자료

- 다음의 증빙자료를 선택하여 구비합니다.

### 가. (공통)

- 2018년 12월 고용보험내역(또는 동일기준의 총 유급근로자 명부)
- 교육시행 관련 각종 증빙자료(교육 수료증, 자격 이수증, 교육 참석사진 등)

### 나. (선택)

- 교육과정별 결과보고(기업 자체양식 활용가능)
  - \* 자체양식 활용 시, 1)교육수혜자수, 2)교육시간 항목 포함필수(1인당 교육시간 산정)
- 교육 결과보고서([제3장] 양식 참조)
  - \* 내부교육 시 별도 양식이 없는 경우 '[제3장]의 교육결과보고서' 양식을 참고
- 기타 신청서에 기재한 내용을 증빙하기 위해 제출하는 자료 일체

## 지표10 고용 성과(배점:10점)

### 지표 정의

- 조직이 얼마나 고용창출 효과가 있는지는 사회적 성과를 평가하는 주요 항목 중 하나이며 이를 확인하기 위한 지표입니다.

### 작성 방법

- 최근 2년간(2017년, 2018년)의 유급근로자 수 및 고용성장률을 신청서 양식에 따라 작성합니다.

#### 【 신청서 양식 】

(단위: 명, %)

| 2018년도 총 유급근로자수 (a)                  | 2017년도 총 유급근로자수 (b) |
|--------------------------------------|---------------------|
|                                      |                     |
| 고용 성장률 $((a-b) \div b) \times 100\%$ |                     |
|                                      |                     |

① 2018년도 총 유급근로자 수(a): 2018년도 12월 기준의 유급근로자 수 기재

\* 증빙서류: 2018년 고용보험내역(12월 기준) 또는 유급근로자 명부

② 2017년도 총 유급근로자 수(a): 2017년도 12월 기준의 유급근로자 수 기재

\* 증빙서류: 2017년 고용보험내역(12월 기준) 또는 유급근로자 명부

③ 고용성장률: 2017년 고용인원 수 대비 2018년 고용인원 성장지수 기재

$$\text{고용성장률} = \frac{('18.12.)총 유급근로자수(a) - ('17.12.)총 유급근로자수(b)}{('17.12.)총 유급근로자수(b)} \times 100\%$$

\* 고용 성장률은 상기 산식에 따라 계산하고,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표기합니다. 고용이 감소한 경우에는 반드시 (-)를 표기해 기재하도록 합니다.

④ 총 유급근로자수는 각 해당연도 12월 기준으로 측정하고, 고용보험내역에 등재된 인원만 인정됩니다.

#### ※ 유급근로자 범위

- 고용형태와 상관없이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를 유급근로자로 인정(대표자는 제외)
- 상시 근로자 뿐 아니라 기간제 근로자, 단기간 근로자 등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고용된 자는 모두 유급근로자에 해당

⑤ 측정 대상년도(2018년)에 설립된 신규기업의 경우, 고용성장률을 산출할 수 없으므로 해당란에 '신규' 기재

## 작성 사례

(단위: 명, %)

| 2018년도 총 유급근로자수 (a)                  | 2017년도 총 유급근로자수 (b) |
|--------------------------------------|---------------------|
| 15 명                                 | 12 명                |
| 고용 성장률 $[(a-b) \div b] \times 100\%$ |                     |
|                                      | 25 %                |

※ 고용성장률 산출 =  $\{ (15\text{명} - 12\text{명}) \div 12\text{명} \} \times 100\% = 25\%$

## 증빙 자료

- 다음의 증빙자료 전체를 구비합니다.
  - 2018년 12월, 2017년 12월 고용보험내역(또는 동일기준의 유급 근로자명부)
  - 기타 신청서에 기재한 내용을 증빙하기 위해 제출하는 자료 일체



## 지표11 매출 성과(배점:10점)

### 지표 정의

- 조직의 지속가능성과 성장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대표지표인 매출액과 매출액 성장을 확인하는 지표입니다.

- 조직 영업활동의 결과로 나타나는 경영성과를 회계상의 매출액 및 영업손익, 매출액 성장을 기준으로 재무적 지속가능성을 확인합니다.

### 작성 방법

- 최근 2년간(2017년, 2018년)의 매출액 및 매출액 성장을 신청서 양식에 따라 기재합니다.

#### 【 신청서 양식 】

(단위: 천원, %)

| 2018년도 매출액 (a)                        | 2017년도 매출액 (b) |
|---------------------------------------|----------------|
|                                       |                |
| 매출액 성장률 $((a-b) \div b) \times 100\%$ |                |
|                                       |                |

① 매출액은 재무제표의 손익계산서를 기준으로 기재(천원 이하는 절사)

\* 증빙서류: 2017, 2018년 재무제표 손익계산서(매출액)

② 매출액 성장률: 2017년 매출액 대비 2018년 매출액 성장지수 기재

$$\text{매출액 성장률} = \frac{2018\text{년 매출액}(a) - ('17.12.)2017\text{년 매출액}(b)}{2017\text{년 매출액}(b)} \times 100\%$$

\* 매출액 성장률은 상기 산식에 따라 계산하고, 매출액이 감소한 경우에는 반드시 (-)를 표기해 기재하도록 합니다.(소수점 첫째자리까지 표기)

#### ※ 유급근로자 범위

- 고용형태와 상관없이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를 유급근로자로 인정(대표자는 제외)
- 상시 근로자 뿐 아니라 기간제 근로자, 단기간 근로자 등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고용된 자는 모두 유급근로자에 해당

- 측정 대상년도(2018년)에 설립된 신규기업의 경우, 매출액성장을 산출할 수 없으므로 해당란에 '신규' 기재

## 작성 사례

(단위: 명, %)

| 2018년도 매출액 (a)                        | 2017년도 매출액 (b) |
|---------------------------------------|----------------|
| 512,000 천원                            | 400,000 천원     |
| 매출액 성장을 $[(a-b) \div b] \times 100\%$ |                |
|                                       | 28.0 %         |

※ 매출액 성장을 산출 =  $\{ (512,000\text{천원} - 400,000\text{천원}) \div 400,000\text{천원} \} \times 100\% = 28\%$

## 증빙 자료

- 다음의 증빙자료 전체를 구비합니다.
  - 2017년, 2018년 재무제표(손익계산서)
  - 기타 신청서에 기재한 내용을 증빙하기 위해 제출하는 자료 일체

## 지표12 영업 성과(배점:5점)

### 지표 정의

-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수익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대표지표인 영업이익을 확인합니다.

### 작성 방법

- 측정 대상연도(2018년) 재무제표의 손익계산서 상 영업이익을 신청서 양식에 따라 기재합니다.

#### 【 신청서 양식 】

(단위: 천원)

| 구 분  | 내 용 |
|------|-----|
| 영업이익 |     |

- ① 영업이익은 재무제표의 손익계산서를 기준으로 기재(천원 이하는 절사)
- ② 손익계산서 상 영업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반드시 (-)를 표기하여 기재  
\* 예시) 영업손실이 500,000원 발생한 경우, ‘- 500’ 으로 기재

### 증빙 자료

- 다음의 증빙자료 전체를 구비합니다.
  - 2018년 기업 재무제표(손익계산서)
  - 기타 신청서에 기재한 내용을 증빙하기 위해 제출하는 자료 일체

## 지표13 노동 생산성(배점:5점)

### 지표 정의

-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해 대표적 수익성 지표인 노동생산성을 측정합니다.

### 작성 방법

- 측정 대상연도(2018년) 재무제표의 손익계산서 상 영업이익을 신청서 양식에 따라 기재합니다.

【 신청서 양식 】

(단위: 천원, 명, %)

| 2018년 총 매출액(a) | 2018년 총 유급근로자(b) |
|----------------|------------------|
|                |                  |
| 노동생산성 (a÷b)    |                  |
|                |                  |

$$\text{노동생산성(1인당 매출액)} = \frac{\text{2018년 총 매출액(a)}}{\text{2018년 총 유급근로자(b)}}$$

- ① 총 매출액: 2018년 재무제표(손익계산서) 상 매출액 기재
- ② 총 유급근로자: 2018년 12월 기준의 고용보험내역(또는 유급근로자 명부)상 등록되어 있는 인원을 기재

### 증빙 자료

- 다음의 증빙자료 전체를 구비합니다.
  - 2018년 12월 기준 고용보험내역(또는 동일기준 유급근로자명부)
  - 2018년 기준 재무제표(손익계산서)
  - 기타 신청서에 기재한 내용을 증빙하기 위해 제출하는 자료 일체



## 지표14 혁신 노력도(배점:10점)

### 지표 정의

- 기업이 경쟁력 및 효율성 강화를 위해 추진한 제도적·기술적 혁신의 노력을 활동내역 및 추진실적 중심으로 종합적이고 정성적으로 평가하는 지표입니다.

- 혁신은 새로운 기술이나 제도 등을 도입함으로써 기존에 존재했던 관습이나 방법 등을 새롭게 바꾸는 것을 의미합니다.
- 기업 활동에 있어서의 혁신은 신기술의 개발, 새로운 경영전략 도입 등 기존에 존재하지 않거나 활용되지 않았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 내는 일련의 과정을 말합니다.
- 이와 같은 혁신을 통해 생산성 증대, 신사업 모델 발굴, 조직문화 개선 등을 달성하고 경쟁력 강화와 함께 지속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습니다.

### 작성 방법

- 최근 2년간(2017년, 2018년)의 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혁신의 노력과 그 결과를 신청서 양식에 따라 기재합니다.

#### [ 신청서 서식 및 구분별 착안사항 ]

- 각 구분별 해당되는 착안사항을 기재하되, 5개 이상 작성할 수 있도록 지향
- 착안사항이 포함하지 못하는 혁신활동의 내용 및 성과는 ‘기타’란 활용하여 기재

| 구분     | 착안사항  |
|--------|---|
| 과정의 혁신 | <ul style="list-style-type: none"><li>① (제도개선 노력) 권한 위임, 프로젝트 조직, 의사소통 구조, 유연근무제 및 시차출퇴근 등 기업운영제도 개선노력 내용 등</li><li>② (전문인력 도입) 제품·서비스 개발 또는 조직의 운영혁신을 위한 전문인력의 채용내역 등(전문인력 자격사항은 기업특성을 고려하여 판단)</li><li>③ (사내제안 및 외부의견) Bottom up 방식의 사내제안을 통한 프로젝트 또는 아이디어 공모전 등의 외부의견 수용 내용 등</li><li>④ (경영시스템 개선) 경영컨설팅, 경영혁신 관련 자문, ERP시스템 및 그룹웨어 도입 등 경영 시스템 선진화 추구 내용 등</li><li>⑤ (시장 및 기술 분석노력) 신제품 개발을 위한 기술동향분석 또는 시장확대를 위한 고객 수요 파악, 경쟁사 분석 내용 등</li><li>⑥ (R&amp;D 투자) 제품 및 서비스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기술개발 수행 내용 및 매출액 대비 R&amp;D투자 비중 등</li><li>⑦ (기타) 상기 사항에 포함되지 않은 기업의 혁신노력 기재</li></ul> |

| 구분     | 착안사항   |
|--------|--|
| 혁신의 결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신상품 도입 및 수익발생) 신상품 도입 내용 및 수익발생 유무 등</li> <li>② (고객만족도 증가율) 고객만족도 조사유무 및 만족도 증가내용 등</li> <li>③ (자원절감) 제조공정·제조시간 등 사업운영에 따른 자원 절감내역 등</li> <li>④ (이용자 수 증가) 혁신활동을 통한 이용자 수 증가내역 등</li> <li>⑤ (기술적 성과) 특허, 상표권, 지재권, 실용신안 내역 등</li> <li>⑥ (혁신 제품·서비스) 기존 시장에 없던 혁신제품·서비스 출시 내역 등</li> <li>⑦ (기타) 상기 사항에 포함되지 않은 혁신결과 기재</li> </ul> |

### 작성 사례

| 구분     | 착안사항  |
|--------|---|
| 과정의 혁신 | <p>(제도개선 노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탄력근무제 운영(자율 출퇴근제 운영)</li> <li>- 의사결정기구와 사업팀 간 소통구조 확립하여 운영의 투명성 및 안정성 제고</li> </ul> <p>(전문 인력 도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품/서비스 개발을 위한 박사, 기술자, 디자이너 등 채용 및 전담팀 구성</li> </ul> <p>(사내제안 및 외부의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내망을 통한 우수 아이디어 선정 및 포상금 지급,</li> <li>- 관련학과 대학생 대상 아이디어 공모전 및 장학금 지원 등 외부의견 수용</li> </ul> <p>(경영시스템 개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영혁신과 관련한 전문가 자문 수행</li> <li>- 회계시스템 외 ERP 추가 모듈(기능) 도입 등으로 경영 시스템 선진화 추구</li> </ul> <p>(시장 및 기술 분석 노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부금이 편중되지 않도록 신규 기부처 발굴을 위한 잠재기부자 설문조사 수행</li> </ul> <p>(R&amp;D 투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R&amp;D투자액 50,000천원(매출액 대비 8% 수준)</li> </ul> |
| 혁신의 결과 | <p>(신상품 출시 및 수익발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제품 출시로 인한 매출(40백만원) 및 거래처(4개소) 증가</li> </ul> <p>(혁신제품 및 서비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부금 플랫폼 구축을 통해 기부자 및 기부금액 증가(전년대비 10%)하였음</li> <li>- 사업장중심의 지역기반 물류센터 조성으로 소분유동이 가능해졌고 이를 통한 지역 농산물 매입량 확대 및 지역 로컬 푸드 시스템을 확립</li> <li>- 운송 카트 개발을 통해 물건 적재, 수집하는 과정에서 작업 효율성 증대</li> </ul>  |

\* 위 내용은 단순예시이며, 형식·분량은 자유롭게 요약하여 기재 가능

### 증빙 자료

- 다음의 증빙자료 전체를 구비합니다.
  - 신청서에 기재한 내용을 증빙하기 위해 제출하는 자료 일체

## 03

## 사회적 가치측정 신청서 작성양식

## 사회적 가치측정 신청서

| 기업명<br>조직유형   |         | 대표자명<br>설립일 |         |       |
|---|---------|-------------|---------|-------|
|   | 작성요령 참조 |             | 작성요령 참조 |       |
| 주 업종  | 작성요령 참조 | 사업자 등록번호    |         |       |
| 인증번호  |         | 전화번호        |         |       |
| 주소<br><br>주요연혁<br>(수상내역 등)<br><br>주요<br>사업내용  | 작성요령 참조 |             |         |       |
|   |         |             |         |       |
|   | 작성요령 참조 |             |         |       |
| 매출 및<br>영업이익<br>(단위: 천원)  | 구 분     | 2016년       | 2017년   | 2018년 |
|   | 매출액     |             |         |       |
|   | 영업이익    |             |         |       |
|   | 당기순이익   |             |         |       |
| 고용현황<br>(단위: 명)   | 구분      | 2016년       | 2017년   | 2018년 |
|   | 총 근로자 수 |             |         |       |
|   | 취약계층    |             |         |       |
| <p style="text-align: center;">본 보고서에 기재된 모든 내용은<br/>사실과 다름없이 작성되었다는 것을 확인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u>20 년 월 일</u></p> <p style="text-align: center;">대표자 (서명)</p> |         |             |         |       |

## ※ 작성요령

### □ 공통사항

1. 보고서 서문 포함, 각 지표별 1장 이내 중요내용 요약기재
  - \* 작성공간이 부족할 경우, 글자크기 편집가능하며 추가 기재를 원할 시 현장실사를 통한 증빙자료 제출 및 조사자 면담으로 세부내용을 제시
2. 측정 대상년도는 현재(2019년 기준)시점에서 전년도(2018년)을 의미

### □ 보고서 서문

1. 조직유형
  - ①인증 사회적기업, ②예비 사회적기업, ③(사회적)협동조합, ④마을기업,  
⑤자활기업, ⑥기타(소셜벤처, 창업팀 등) 중 택 1
2. 주 업종: 제시된 한국표준산업분류표(9차 개정)상 대분류에 따라 기재, 복수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의 경우 주력업종(매출액 40% 이상)을 기재

| 업종 분류 |                                      |
|-------|--------------------------------------|
| 1     | 농업, 임업 및 어업(A)                       |
| 2     | 광업(B)                                |
| 3     | 제조업(C)                               |
| 4     |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D)                |
| 5     |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E)           |
| 6     | 건설업(F)                               |
| 7     | 도매 및 소매업(G)                          |
| 8     | 운수업(H)                               |
| 9     | 숙박 및 음식점업(I)                         |
| 10    |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J)             |
| 11    | 금융 및 보험업(K)                          |
| 12    | 부동산업 및 임대업(L)                        |
| 13    |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M)                  |
| 14    |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N)                |
| 15    | 공공 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O)               |
| 16    | 교육 서비스업(P)                           |
| 17    |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Q)                   |
| 18    |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R)               |
| 19    |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개인 서비스업(S)             |
| 20    |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 소비 생산활동(T) |
| 21    | 국제 및 외국기관(U)                         |

3. 주소: 도로명 주소 기재
4. 설립일: 기업의 설립 '연월일'까지 기재 (예시: 2019.1.1.)

 **지표1** 사회적가치추구

|                             |   |                                |                                |                                |                                |
|-----------------------------|---|--------------------------------|--------------------------------|--------------------------------|--------------------------------|
| 미션                          |   |                                |                                |                                |                                |
| 비전                          |   |                                |                                |                                |                                |
| 추진전략                        |   |                                |                                |                                |                                |
| 사회적 목적<br>명시자료              | <table border="1"><tr><td>정관 <input type="checkbox"/></td><td>미션선언문 <input type="checkbox"/></td><td>비전선언문 <input type="checkbox"/></td><td>기타 자료 <input type="checkbox"/></td></tr></table> <p>* 해당항목에 체크박스 표시 <input checked="" type="checkbox"/> (중복체크 가능)</p> | 정관 <input type="checkbox"/>    | 미션선언문 <input type="checkbox"/> | 비전선언문 <input type="checkbox"/> | 기타 자료 <input type="checkbox"/> |
| 정관 <input type="checkbox"/> | 미션선언문 <input type="checkbox"/>  | 비전선언문 <input type="checkbox"/> | 기타 자료 <input type="checkbox"/> |                                |                                |



## 지표2 사회적 성과 관리체계 구축 여부

| 판단요소          | 구축여부   | 내용(요약) |
|---------------|--|--------|
| 측정기준          | <input type="checkbox"/> 유<br><input type="checkbox"/> 무 |        |
| 담당인력          | <input type="checkbox"/> 유<br><input type="checkbox"/> 무 |        |
| 성과보고서         | <input type="checkbox"/> 유<br><input type="checkbox"/> 무 |        |
| 평가위원회         | <input type="checkbox"/> 유<br><input type="checkbox"/> 무 |        |
| 평가결과<br>사내 공유 | <input type="checkbox"/> 유<br><input type="checkbox"/> 무 |        |



### 지표3 사업활동의 사회적 가치 지향성

| 판단기준                                | 내용(요약) |
|-------------------------------------|--------|
| 내부운영의<br>사회가치                       |        |
| 외부 운영<br>(제품·서비스<br>및 이용자)의<br>사회가치 |        |

**지표4** 사회적경제기업과의 협력수준

| 협력기관 | 협력 활동 | 횟수 |
|------|-------|----|
|      |       |    |
|      |       |    |
|      |       |    |
|      |       |    |
|      |       |    |

**지표5** 지역사회와의 협력 수준

| 협력기관 | 협력 활동 | 횟수 |
|------|-------|----|
|      |       |    |
|      |       |    |
|      |       |    |
|      |       |    |
|      |       |    |

 **지표6 사회적 환원 노력도**

| 판단기준                    | 내용(요약) |
|-------------------------|--------|
| 조직 내부운영을 위한 수익 (이윤)의 활용 |        |
| 조직 외부활동을 위한 수익 (이윤)의 활용 |        |
| 기타 (비금전적) 조직의 역량 활용     |        |

 **지표7 참여적 의사결정 비율**

| 의사<br>결정기구 | 전체<br>구성원 | 회의<br>일자 | 사외<br>이사(명) | 근로자 인<br>사(명) | 조합원<br>(명) | 총 참여<br>인원(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참가비율       |           |          |             |               |            |               |

 **지표8 근로자 임금수준**

(단위: 원, 시간)

| 전체 유급근로자 총 급여(a) | 전체 유급근로자 총 근무시간(b) |
|------------------|--------------------|
| 원                | 시간                 |
| 근로자 평균 시급(a÷b)   |                    |
| 원/시간             |                    |

## 지표9 근로자 역량강화 노력

| 교육                  |        | 전체<br>근로자수<br>[A] | 수혜자<br>수<br>[B] | 교육<br>시간<br>[C] | 1인당<br>교육시간<br>[D=(B*C)/A] |
|---------------------|--------|-------------------|-----------------|-----------------|----------------------------|
| 영역                  | 교육과정 명 |                   |                 |                 |                            |
| 법정<br>의무<br>교육<br>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계(연평균 1인당 교육시간)    |        |                   |                 |                 |                            |

## 지표10 고용성과

(단위: 명, %)

| 2018년도 총 유급근로자수 (a)                  | 2017년도 총 유급근로자수 (b) |
|--------------------------------------|---------------------|
|                                      |                     |
| 고용 성장을 $((a-b) \div b) \times 100\%$ |                     |
|                                      |                     |

## 지표11 매출성과

(단위: 천원, %)

| 2018년도 매출액 (a)                        | 2017년도 매출액 (b) |
|---------------------------------------|----------------|
|                                       |                |
| 매출액 성장률 $((a-b) \div b) \times 100\%$ |                |
|                                       |                |

## 지표12 영업성과

(단위: 천원)

| 구 분  | 내 용 |
|------|-----|
| 영업이익 |     |

## 지표13 노동생산성

(단위: 천원, 명)

| 2018년 총 매출액(a)     | 2018년 총 유급근로자(b) |
|--------------------|------------------|
|                    |                  |
| 노동생산성 $(a \div b)$ |                  |
|                    |                  |

 **지표14 혁신노력도**

| 판단기준   | 내용(요약) |
|--------|--------|
| 과정의 혁신 |        |
| 혁신의 결과 |        |

# 3

## 증빙자료

서식 및 참고예시

Formats & Examples

---

## 1. 미션선언문

### 미션선언문

기업의 핵심미션(mission)을 한 문장으로 기재

·필요한 경우 미션에 대한 세부 내용을 기재

기업명 기재

#### ※ 참고자료

### 미션선언문

우리가 속한 지역사회를 위한 최고의 가치창조  
We Do Our B · E · S · T !

- Benefit. 도시활성화 사업을 통해 지역경제발전과 사회복지증진 기여
- Efficiency. 효율적인 조직운영과 윤리경영으로 기업가치 극대화
- Satisfaction. 고객감동실천으로 사랑받는 시민기업
- Technonlogy. 기술축적을 통한 미래창조

주식회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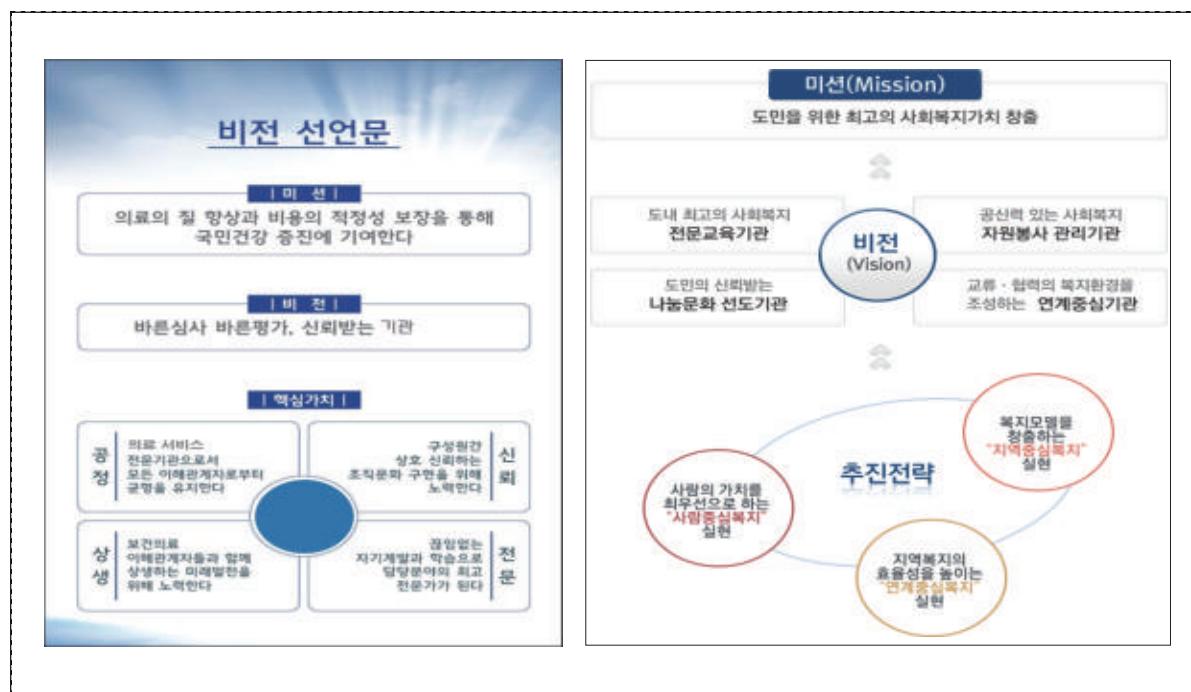
※ 위의 서식은 참고용일뿐, 기업의 자체양식 활용가능

## 2. 비전선언문

|                    |  |  |  |
|--------------------|--|--|--|
| 미션                 |  |  |  |
| 비전                 |  |  |  |
| 핵심가치<br>또는<br>추진전략 |  |  |  |

주식회사 OOOO

### ※ 참고자료



※ 위의 서식은 참고용일뿐, 기업의 자체양식 활용가능

### 3. 사회적 성과관리 보고서

#### 20 년 사회적 성과관리보고서

| 사회적 성과 목표 및 지표 | <p>- 목적 및 의의: 기업이 추구하고자 하는 사회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해당년도의 목표와 각 지표별 등급(S, A, B, C, D 등)을 기업별 특성에 맞게 설정하여 자율적으로 지속 관리도록 함</p> <table border="1"> <thead> <tr> <th rowspan="2">목표</th><th rowspan="2">지표</th><th colspan="5">등급</th></tr> <tr> <th>S</th><th>A</th><th>B</th><th>C</th><th>D</th></tr> </thead> <tbody> <tr> <td>지역사회<br/>환경보호</td><td>생산과정 중 발생되는 산업폐기물 10톤 감축</td><td>10톤 이상</td><td>7톤 이상</td><td>4톤 이상</td><td>1톤 이상</td><td>0톤</td></tr> <tr> <td>취약계층<br/>고용창출</td><td>청계천 환경정화 운동 5회(임직원 봉사활동)</td><td>5회 이상</td><td>4회 이상</td><td>3회 이상</td><td>2회 이상</td><td>1회 이상</td></tr> <tr> <td>취약계층<br/>고용창출</td><td>연내 취약계층 10명 고용달성</td><td>10명 이상</td><td>7명 이상</td><td>4명 이상</td><td>1명 이상</td><td>0명</td></tr> <tr> <td>기타</td><td colspan="5">상기 표로 나타내기 어려운 목표 및 지표의 경우, 자유양식으로 기재</td><td></td></tr> </tbody> </table> |                      |         |       |       |       | 목표 | 지표 | 등급   |    |    |              |                          | S                    | A       | B | C            | D                        | 지역사회<br>환경보호 | 생산과정 중 발생되는 산업폐기물 10톤 감축 | 10톤 이상 | 7톤 이상        | 4톤 이상            | 1톤 이상 | 0톤    | 취약계층<br>고용창출 | 청계천 환경정화 운동 5회(임직원 봉사활동) | 5회 이상                                 | 4회 이상 | 3회 이상 | 2회 이상 | 1회 이상 | 취약계층<br>고용창출 | 연내 취약계층 10명 고용달성 | 10명 이상 | 7명 이상 | 4명 이상 | 1명 이상 | 0명 | 기타 | 상기 표로 나타내기 어려운 목표 및 지표의 경우, 자유양식으로 기재 |  |  |  |  |  |
|----------------|--|----------------------|---------|-------|-------|-------|----|----|------|----|----|--------------|--------------------------|----------------------|---------|---|--------------|--------------------------|--------------|--------------------------|--------|--------------|------------------|-------|-------|--------------|--------------------------|---------------------------------------|-------|-------|-------|-------|--------------|------------------|--------|-------|-------|-------|----|----|---------------------------------------|--|--|--|--|--|
| 목표             | 지표   | 등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S                    | A       | B     | C     | D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지역사회<br>환경보호   | 생산과정 중 발생되는 산업폐기물 10톤 감축   | 10톤 이상               | 7톤 이상   | 4톤 이상 | 1톤 이상 | 0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취약계층<br>고용창출   | 청계천 환경정화 운동 5회(임직원 봉사활동)   | 5회 이상                | 4회 이상   | 3회 이상 | 2회 이상 | 1회 이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취약계층<br>고용창출   | 연내 취약계층 10명 고용달성   | 10명 이상               | 7명 이상   | 4명 이상 | 1명 이상 | 0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타             | 상기 표로 나타내기 어려운 목표 및 지표의 경우, 자유양식으로 기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사회적 성과 추진내용    | <table border="1"> <thead> <tr> <th>목표</th> <th>지표</th> <th>추진내용</th> <th>결과</th> <th>등급</th> </tr> </thead> <tbody> <tr> <td>지역사회<br/>환경보호</td> <td>생산과정 중 발생되는 산업폐기물 10톤 감축</td> <td>지표달성을 위해 추진한 활동내용 기재</td> <td>7.5톤 감축</td> <td>A</td> </tr> <tr> <td>취약계층<br/>고용창출</td> <td>청계천 환경정화 운동 5회(임직원 봉사활동)</td> <td></td> <td>2회 실시</td> <td>C</td> </tr> <tr> <td>취약계층<br/>고용창출</td> <td>연내 취약계층 10명 고용달성</td> <td></td> <td>5명 고용</td> <td>B</td> </tr> <tr> <td>기타</td> <td colspan="5">상기 표로 모든 추진내용을 나타내기 어려운 경우, 자유양식으로 기재</td><td></td></tr> </tbody> </table>   |                      |         |       |       |       | 목표 | 지표 | 추진내용 | 결과 | 등급 | 지역사회<br>환경보호 | 생산과정 중 발생되는 산업폐기물 10톤 감축 | 지표달성을 위해 추진한 활동내용 기재 | 7.5톤 감축 | A | 취약계층<br>고용창출 | 청계천 환경정화 운동 5회(임직원 봉사활동) |              | 2회 실시                    | C      | 취약계층<br>고용창출 | 연내 취약계층 10명 고용달성 |       | 5명 고용 | B            | 기타                       | 상기 표로 모든 추진내용을 나타내기 어려운 경우, 자유양식으로 기재 |       |       |       |       |              |                  |        |       |       |       |    |    |                                       |  |  |  |  |  |
| 목표             | 지표   | 추진내용                 | 결과      | 등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지역사회<br>환경보호   | 생산과정 중 발생되는 산업폐기물 10톤 감축   | 지표달성을 위해 추진한 활동내용 기재 | 7.5톤 감축 | A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취약계층<br>고용창출   | 청계천 환경정화 운동 5회(임직원 봉사활동)   |                      | 2회 실시   | C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취약계층<br>고용창출   | 연내 취약계층 10명 고용달성   |                      | 5명 고용   | B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타             | 상기 표로 모든 추진내용을 나타내기 어려운 경우, 자유양식으로 기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사회적 성과관리 보고서

| 비고           | 미진했던 부분이나 추후 보완해야 할 사항 및<br>차년도 사회적 성과관리 계획 등 기타 내용 기재  |        |      |             |  |      |        |  |  |  |  |  |  |  |  |  |  |  |  |    |  |  |  |
|--------------|---|--------|------|-------------|--|------|--------|--|--|--|--|--|--|--|--|--|--|--|--|----|--|--|--|
| 담당자          | 사회적 성과관리 담당부서, 담당자명, 직책 기재  |        |      |             |  |      |        |  |  |  |  |  |  |  |  |  |  |  |  |    |  |  |  |
| 사회적<br>성과 평가 |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style="background-color: #d3d3d3;"> <th colspan="2">사회적 성과 평가의견</th> </tr> <tr style="background-color: #d3d3d3;"> <th>평가위원</th> <th>위원별 의견</th> </tr> </thead> <tbody> <tr><td></td><td></td></tr> <tr><td></td><td></td></tr> <tr><td></td><td></td></tr> <tr><td></td><td></td></tr> <tr><td></td><td></td></tr> <tr><td></td><td></td></tr> <tr style="background-color: #d3d3d3;"> <th colspan="2">총평</th> </tr> <tr><td colspan="2"></td></tr> </tbody> </table> |        |      | 사회적 성과 평가의견 |  | 평가위원 | 위원별 의견 |  |  |  |  |  |  |  |  |  |  |  |  | 총평 |  |  |  |
|              | 사회적 성과 평가의견   |        |      |             |  |      |        |  |  |  |  |  |  |  |  |  |  |  |  |    |  |  |  |
|              | 평가위원  | 위원별 의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총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평가일          | 20 . . .  | 평가위원장  | (서명) |             |  |      |        |  |  |  |  |  |  |  |  |  |  |  |  |    |  |  |  |
| 장소           |   | 평가위원   | (서명) |             |  |      |        |  |  |  |  |  |  |  |  |  |  |  |  |    |  |  |  |
|              |   | 평가위원   | (서명) |             |  |      |        |  |  |  |  |  |  |  |  |  |  |  |  |    |  |  |  |
| 간사           |   | 평가위원   | (서명) |             |  |      |        |  |  |  |  |  |  |  |  |  |  |  |  |    |  |  |  |

※ 기울임, 파란색으로 음영표시 된 작성요령(예시)은 참고 후 삭제요망

※ 항목별 분량은 조절 가능하나 전체 2장 이내로 요약 작성요망

#### 4. 사회적 성과 평가위원 위촉장

제 20 - 호

## 위 촉 장

소 속 : 000

직 위 : 000

성 명 : 000

귀하를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  
주식회사 ○○○○의 사회적 성과 평가위원  
으로 위촉합니다.

20 년 월 일

주식회사 ○ ○ ○ ○

대 표 홍 길 동

## 5. 교육결과보고서

### 교 육 결 과 보 고 서

|                       |                          |    |  |
|-----------------------|--------------------------|----|--|
| 교육명                   |                          |    |  |
| 일자                    | 20 년 월 일                 | 강사 |  |
| 시간                    | 17:00~18:00(1시간)         | 장소 |  |
| 참가자                   | 홍길동, 000, □□□, △△△ 외 10명 |    |  |
| 주요교육내용                |                          |    |  |
| 비고                    |                          |    |  |
| 교육진행 사진 또는 교육자료 사진 삽입 |                          |    |  |

※ 위의 서식은 참고용일뿐, 기업의 자체양식 활용가능

## 교육 참석자 명단

| 연번 | 소속 부서 | 성명 | 서명 |
|----|-------|----|----|
| 1  |       |    |    |
| 2  |       |    |    |
| 3  |       |    |    |
| 4  |       |    |    |
| 5  |       |    |    |
| 6  |       |    |    |
| 7  |       |    |    |
| 8  |       |    |    |
| 9  |       |    |    |
| 10 |       |    |    |
| 11 |       |    |    |
| 12 |       |    |    |
| 13 |       |    |    |
| 14 |       |    |    |
| 15 |       |    |    |
| 16 |       |    |    |
| 17 |       |    |    |
| 18 |       |    |    |
| 19 |       |    |    |
| 20 |       |    |    |

※ 위의 서식은 참고용일뿐, 기업의 자체양식 활용가능

# 4

## 업종별 측정기준표

Measurement  
Standard Table

---

[참고자료 1] 업종 분류기준

| 업종 분류(한국표준산업분류(9자 개정) 대분류 참조) |                                     |
|-------------------------------|-------------------------------------|
| 1                             | 농업, 임업 및 어업(A)                      |
| 2                             | 광업(B)                               |
| 3                             | 제조업(C)                              |
| 4                             |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D)               |
| 5                             |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E)          |
| 6                             | 건설업(F)                              |
| 7                             | 도매 및 소매업(G)                         |
| 8                             | 운수업(H)                              |
| 9                             | 숙박 및 음식점업(I)                        |
| 10                            |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J)            |
| 11                            | 금융 및 보험업(K)                         |
| 12                            | 부동산업 및 임대업(L)                       |
| 13                            |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M)                 |
| 14                            |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N)               |
| 15                            | 공공 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O)              |
| 16                            | 교육 서비스업(P)                          |
| 17                            |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Q)                  |
| 18                            |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R)              |
| 19                            |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개인 서비스업(S)            |
| 20                            |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T) |
| 21                            | 국제 및 외국기관(U)                        |

※ 복수업종을 운영하는 경우, 주력 업종(매출액 40%이상)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참고자료 2] 사업활동의 사회적 가치 지향성(지표 3)

(단위: %, 원)

| 업종 분류                        | 취약계층 고용비율<br>중위 값 | 취약계층<br>평균시급 중위 값 |
|------------------------------|-------------------|-------------------|
| 1 농업, 임업 및 어업(A)             | 61.9%             | 8,521             |
| 2 제조업(C)                     | 66.7%             | 8,728             |
| 3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D)      | 50.0%             | 9,761             |
| 4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E) | 47.4%             | 13,947            |
| 5 건설업(F)                     | 60.0%             | 9,609             |
| 6 도매 및 소매업(G)                | 62.5%             | 9,206             |
| 7 운수업(H)                     | 73.5%             | 8,631             |
| 8 숙박 및 음식점업(I)               | 66.7%             | 8,623             |
| 9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J)   | 42.9%             | 9,461             |
| 10 금융 및 보험업(K)               | 16.7%             | 12,371            |
| 11 부동산업 및 임대업(L)             | 0.0%              | 8,631             |
| 12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M)       | 46.4%             | 9,505             |
| 13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N)     | 75.5%             | 9,409             |
| 14 교육 서비스업(P)                | 50.0%             | 9,387             |
| 15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Q)        | 65.3%             | 8,758             |
| 16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R)    | 41.7%             | 8,631             |
| 17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개인 서비스업(S)  | 61.5%             | 9,177             |
| 사회적기업 전체 업종                  | 60.0%             | 8,892             |

※ 상기 업종분류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은 전체 사회적기업 수치로 측정

\* 사회적기업이 존재하지 않는 업종(4개 분야)

- 광업(B),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O),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 소비 생산활동(T), 국제 및 외국기관(U)

[참고자료 3] 이윤의 사회적 환원 노력도(지표 6)

(단위: 천 원)

| 업종 분류                        | 사회서비스 제공 평균값 | 지역사회 재투자 평균값 |
|------------------------------|--------------|--------------|
| 1 농업, 임업 및 어업(A)             | 1,552        | 888          |
| 2 제조업(C)                     | 4,795        | 2,334        |
| 3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D)      | 1,180        | 3,083        |
| 4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E) | 4,499        | 16,527       |
| 5 건설업(F)                     | 4,979        | 2,294        |
| 6 도매 및 소매업(G)                | 41,160       | 2,882        |
| 7 운수업(H)                     | 56,400       | 775          |
| 8 숙박 및 음식점업(I)               | 1,323        | 1,255        |
| 9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J)   | 2,069        | 1,477        |
| 10 금융 및 보험업(K)               | 0            | 8,277        |
| 11 부동산업 및 임대업(L)             | 0            | 540          |
| 12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M)       | 969          | 8,017        |
| 13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N)     | 1,943        | 2,139        |
| 14 교육 서비스업(P)                | 1,224        | 1,215        |
| 15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Q)        | 6,754        | 826          |
| 16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R)    | 3,423        | 1,204        |
| 17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개인 서비스업(S)  | 78           | 873          |
| 사회적기업 전체 업종                  | 8,005        | 2,340        |

※ 상기 업종분류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은 전체 사회적기업 수치로 측정

\* 사회적기업이 존재하지 않는 업종(4개 분야)

- 광업(B),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O),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 소비 생산활동(T), 국제 및 외국기관(U)

## [참고자료 4] 근로자 시급수준(지표 8)

| 업종 분류              |                              | 0%<br>20% 미만 | 20% 이상<br>40% 미만        | 40% 이상<br>60% 미만         | 60% 이상<br>80% 미만         | 80% 이상<br>100% | (단위: 원)<br>중위값 |
|--------------------|------------------------------|--------------|-------------------------|--------------------------|--------------------------|----------------|----------------|
| 1                  | 농업, 임업 및 어업(A)               | 7,873원<br>미만 | 7,873원 이상<br>8,994원 미만  | 8,994원 이상<br>9,394원 미만   | 9,394원 이상<br>10,213원 미만  | 10,213원<br>이상  | 9,245원         |
| 2                  | 제조업(C)                       | 8,327원<br>미만 | 8,327원 이상<br>9,206원 미만  | 9,206원 이상<br>10,281원 미만  | 10,281원 이상<br>11,674원 미만 | 11,674원<br>이상  | 9,753원         |
| 3                  |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 재생 및 환경 복원업(E) | 9,405원<br>미만 | 9,405원 이상<br>12,771원 미만 | 12,771원 이상<br>20,908원 미만 | 20,908원 이상<br>29,291원 미만 | 29,291원<br>이상  | 14,596원        |
| 4                  | 건설업(F)                       | 9,137원<br>미만 | 9,137원 이상<br>10,326원 미만 | 10,326원 이상<br>11,397원 미만 | 11,397원 이상<br>12,495원 미만 | 12,495원<br>이상  | 10,602원        |
| 5                  | 도매 및 소매업(G)                  | 8,563원<br>미만 | 8,563원 이상<br>9,434원 미만  | 9,434원 이상<br>10,466원 미만  | 10,466원 이상<br>11,612원 미만 | 11,612원<br>이상  | 9,941원         |
| 6                  | 운수업(H)                       | 8,451원<br>미만 | 8,451원 이상<br>8,779원 미만  | 8,779원 이상<br>10,881원 미만  | 10,881원 이상<br>12,200원 미만 | 12,200원<br>이상  | 9,761원         |
| 7                  | 숙박 및 음식점업(I)                 | 8,176원<br>미만 | 8,176원 이상<br>8,751원 미만  | 8,751원 이상<br>9,525원 미만   | 9,525원 이상<br>10,537원 미만  | 10,537<br>원 이상 | 9,206원         |
| 8                  |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J)     | 8,880원<br>미만 | 8,880원 이상<br>10,039원 미만 | 10,039원 이상<br>11,094원 미만 | 11,094원 이상<br>11,929원 미만 | 11,929원<br>이상  | 10,528원        |
| 9                  | 부동산업 및 임대업(L)                | 9,104원<br>미만 | 9,104원 이상<br>11,872원 미만 | 11,872원 이상<br>14,423원 미만 | 14,423원 이상<br>17,092원 미만 | 17,092원<br>이상  | 13,187원        |
| 10                 |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M)          | 9,420원<br>미만 | 9,420원 이상<br>11,028원 미만 | 11,028원 이상<br>15,550원 미만 | 15,550원 이상<br>13,180원 미만 | 13,180원<br>이상  | 11,297원        |
| 11                 |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 지원 서비스업(N)       | 8,636원<br>미만 | 8,636원 이상<br>9,379원 미만  | 9,379원 이상<br>10,263원 미만  | 10,263원 이상<br>11,003원 미만 | 11,003원<br>이상  | 9,915원         |
| 12                 | 교육 서비스업(P)                   | 8,383원<br>미만 | 8,383원 이상<br>9,457원 미만  | 9,457원 이상<br>10,472원 미만  | 10,472원 이상<br>12,105원 미만 | 12,105원<br>이상  | 9,910원         |
| 13                 |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Q)           | 8,277원<br>미만 | 8,277원 이상<br>8,907원 미만  | 8,907원 이상<br>9,656원 미만   | 9,656원 이상<br>10,965원 미만  | 10,965원<br>이상  | 9,321원         |
| 14                 |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R)       | 8,124원<br>미만 | 8,124원 이상<br>9,014원 미만  | 9,014원 이상<br>10,062원 미만  | 10,062원 이상<br>11,483원 미만 | 11,483원<br>이상  | 9,312원         |
| 15                 |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개인 서비스업(S)     | 8,179원<br>미만 | 8,179원 이상<br>9,067원 미만  | 9,067원 이상<br>9,707원 미만   | 9,707원 이상<br>10,282원 미만  | 10,282원<br>이상  | 9,333원         |
| <b>사회적기업 전체 업종</b> |                              | 8,400원<br>미만 | 8,400원 이상<br>9,279원 미만  | 9,270원 이상<br>10,316원 미만  | 10,316원 이상<br>11,372원 미만 | 11,372원<br>이상  | 9,781원         |

※ 상기 업종분류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은 전체 사회적기업 수치로 측정

### \* 업종 내 사회적기업 부재 또는 부족으로 등급별 구간 산출이 불가능한 업종(6개 분야)

- (부재) 광업(B),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O),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 소비 생산활동(T), 국제 및 외국기관(U)
- (부족)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D), 금융 및 보험업(K)

## [참고자료 5] 고용 성과(지표 10)

| 업종 분류       |                              | 0%<br>20% 미만 | 20% 이상<br>40% 미만 | 40% 이상<br>60% 미만 | 60% 이상<br>80% 미만 | 80% 이상<br>100% | (단위: 명)<br>중위값 |
|-------------|------------------------------|--------------|------------------|------------------|------------------|----------------|----------------|
| 1           | 농업, 임업 및 어업(A)               | 3명 미만        | 3명 이상 ~ 5명 미만    | 5명 이상 ~ 6명 미만    | 6명 이상 ~ 8명 미만    | 8명 이상          | 5명             |
| 2           | 제조업(C)                       | 5명 미만        | 5명 이상 ~ 8명 미만    | 8명 이상 ~ 14명 미만   | 14명 이상 ~ 24명 미만  | 24명 이상         | 11명            |
| 3           |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 재생 및 환경 복원업(E) | 13명 미만       | 13명 이상 ~ 28명 미만  | 28명 이상 ~ 33명 미만  | 33명 이상 ~ 38명 미만  | 38명 이상         | 31명            |
| 4           | 건설업(F)                       | 4명 미만        | 4명 이상 ~ 5명 미만    | 5명 이상 ~ 7명 미만    | 7명 이상 ~ 11명 미만   | 11명 이상         | 6명             |
| 5           | 도매 및 소매업(G)                  | 4명 미만        | 4명 이상 ~ 6명 미만    | 6명 이상 ~ 9명 미만    | 9명 이상 ~ 16명 미만   | 16명 이상         | 8명             |
| 6           | 운수업(H)                       | 5명 미만        | 5명 이상 ~ 6명 미만    | 6명 이상 ~ 9명 미만    | 9명 이상 ~ 39명 미만   | 39명 이상         | 7명             |
| 7           | 숙박 및 음식점업(I)                 | 4명 미만        | 4명 이상 ~ 5명 미만    | 5명 이상 ~ 8명 미만    | 8명 이상 ~ 13명 미만   | 13명 이상         | 6명             |
| 8           |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J)     | 4명 미만        | 4명 이상 ~ 5명 미만    | 5명 이상 ~ 7명 미만    | 7명 이상 ~ 10명 미만   | 10명 이상         | 6명             |
| 9           | 부동산업 및 임대업(L)                | 2명 미만        | 2명 이상 ~ 3명 미만    | 3명 이상 ~ 7명 미만    | 7명 이상 ~ 15명 미만   | 15명 이상         | 4명             |
| 10          |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M)          | 4명 미만        | 4명 이상 ~ 5명 미만    | 5명 이상 ~ 9명 미만    | 9명 이상 ~ 13명 미만   | 13명 이상         | 6명             |
| 11          |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 지원 서비스업(N)       | 10명 미만       | 10명 이상 ~ 24명 미만  | 24명 이상 ~ 42명 미만  | 42명 이상 ~ 77명 미만  | 77명 이상         | 30명            |
| 12          | 교육 서비스업(P)                   | 3명 미만        | 3명 이상 ~ 5명 미만    | 5명 이상 ~ 6명 미만    | 6명 이상 ~ 12명 미만   | 12명 이상         | 6명             |
| 13          |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Q)           | 9명 미만        | 9명 이상 ~ 21명 미만   | 21명 이상 ~ 39명 미만  | 39명 이상 ~ 82명 미만  | 82명 이상         | 29명            |
| 14          |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R)       | 3명 미만        | 3명 이상 ~ 5명 미만    | 5명 이상 ~ 7명 미만    | 7명 이상 ~ 11명 미만   | 11명 이상         | 5명             |
| 15          |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개인 서비스업(S)     | 5명 미만        | 5명 이상 ~ 7명 미만    | 7명 이상 ~ 10명 미만   | 10명 이상 ~ 19명 미만  | 19명 이상         | 9명             |
| 사회적기업 전체 업종 |                              | 4명 미만        | 4명 이상 ~ 7명 미만    | 7명 이상 ~ 12명 미만   | 12명 이상 ~ 27명 미만  | 27명 이상         | 9명             |

※ 상기 업종분류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은 전체 사회적기업 수치로 측정

### \* 업종 내 사회적기업 부재 또는 부족으로 등급별 구간 산출이 불가능한 업종(6개 분야)

- (부재) 광업(B),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O),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 소비 생산활동(T), 국제 및 외국기관(U)
- (부족)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D), 금융 및 보험업(K)

## [참고자료 6] 매출성과(지표 11)

(단위: 천 원)

| 업종 분류       |                              | 0%<br>20% 미만  | 20% 이상<br>40% 미만           | 40% 이상<br>60% 미만             | 60% 이상<br>80% 미만             | 80% 이상<br>100%  | 중위값       |
|-------------|------------------------------|---------------|----------------------------|------------------------------|------------------------------|-----------------|-----------|
| 1           | 농업, 임업 및 어업(A)               | 161,766<br>미만 | 161,766 이상<br>454,595 미만   | 454,595 이상<br>619,222 미만     | 619,222 이상<br>1,500,975 미만   | 1,500,975<br>이상 | 531,276   |
| 2           | 제조업(C)                       | 238,517<br>미만 | 238,517 이상<br>506,632 미만   | 506,632 이상<br>1,099,304 미만   | 1,099,304 이상<br>2,310,729 미만 | 2,310,729<br>이상 | 769,096   |
| 3           |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 재생 및 환경 복원업(E) | 516,201<br>미만 | 516,201 이상<br>1,970,025 미만 | 1,970,025 이상<br>2,428,739 미만 | 2,428,739 이상<br>2,886,610 미만 | 2,886,610<br>이상 | 2,327,755 |
| 4           | 건설업(F)                       | 284,329<br>미만 | 284,329 이상<br>476,116 미만   | 476,116 이상<br>682,697 미만     | 682,697 이상<br>1,165,658 미만   | 1,165,658<br>이상 | 567,214   |
| 5           | 도매 및 소매업(G)                  | 190,664<br>미만 | 190,664 이상<br>446,998 미만   | 446,998 이상<br>949,454 미만     | 949,454 이상<br>2,554,751 미만   | 2,554,751<br>이상 | 711,166   |
| 6           | 운수업(H)                       | 164,046<br>미만 | 164,046 이상<br>245,151 미만   | 245,151 이상<br>1,135,268 미만   | 1,135,268 이상<br>2,329,024 미만 | 2,329,024<br>이상 | 591,060   |
| 7           | 숙박 및 음식점업(I)                 | 98,433<br>미만  | 98,433 이상<br>147,368 미만    | 147,368 이상<br>269,725 미만     | 269,725 이상<br>529,139 미만     | 529,139<br>이상   | 190,026   |
| 8           |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J)     | 213,165<br>미만 | 213,165 이상<br>285,133 미만   | 285,133 이상<br>510,674 미만     | 510,674 이상<br>864,275 미만     | 864,275<br>이상   | 434,779   |
| 9           | 부동산업 및 임대업(L)                | 118,512<br>미만 | 118,512 이상<br>268,390 미만   | 268,390 이상<br>668,701 미만     | 668,701 이상<br>1,492,684 미만   | 1,492,684<br>이상 | 423,591   |
| 10          |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M)          | 184,745<br>미만 | 184,745 이상<br>228,000 미만   | 228,000 이상<br>475,744 미만     | 475,744 이상<br>996,526 미만     | 996,526<br>이상   | 373,414   |
| 11          |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 지원 서비스업(N)       | 285,740<br>미만 | 285,740 이상<br>565,756 미만   | 565,756 이상<br>1,007,720 미만   | 1,007,720 이상<br>1,879,279 미만 | 1,879,279<br>이상 | 786,834   |
| 12          | 교육 서비스업(P)                   | 99,357<br>미만  | 99,357 이상<br>179,979 미만    | 179,979 이상<br>298,060 미만     | 298,060 이상<br>727,561 미만     | 727,561<br>이상   | 228,842   |
| 13          |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Q)           | 271,675<br>미만 | 271,675 이상<br>478,645 미만   | 478,645 이상<br>916,750 미만     | 916,750 이상<br>1,789,927 미만   | 1,789,927<br>이상 | 661,932   |
| 14          |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R)       | 119,420<br>미만 | 119,420 이상<br>194,438 미만   | 194,438 이상<br>290,296 미만     | 290,296 이상<br>528,148 미만     | 528,148<br>이상   | 230,105   |
| 15          |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개인 서비스업(S)     | 128,865<br>미만 | 128,865 이상<br>242,030 미만   | 242,030 이상<br>356,083 미만     | 356,083 이상<br>657,035 미만     | 657,035<br>이상   | 293,968   |
| 사회적기업 전체 업종 |                              | 177,924<br>미만 | 177,924 이상<br>346,820 미만   | 346,820 이상<br>728,933 미만     | 728,933 이상<br>1,626,554 미만   | 1,626,554<br>이상 | 497,669   |

※ 상기 업종분류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은 전체 사회적기업 수치로 측정

### \* 업종 내 사회적기업 부재 또는 부족으로 등급별 구간 산출이 불가능한 업종(6개 분야)

- (부재) 광업(B),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O),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 소비 생산활동(T), 국제 및 외국기관(U)
- (부족)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D), 금융 및 보험업(K)

[참고자료 7] 고용 성장률 및 매출액 성장률(지표 10, 11)

(단위: %)

| 업종 분류                        | 고용성장률<br>중위값 | 매출액성장률<br>중위값 |
|------------------------------|--------------|---------------|
| 1 농업, 임업 및 어업(A)             | -14.6%       | 5.0%          |
| 2 제조업(C)                     | 0.0%         | 3.2%          |
| 3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D)      | 0.0%         | 11.9%         |
| 4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E) | 0.0%         | -5.8%         |
| 5 건설업(F)                     | 0.0%         | 4.5%          |
|                              | 0.0%         | -5.9%         |
| 6 도매 및 소매업(G)                | 0.0%         | 4.8%          |
| 7 운수업(H)                     | 0.0%         | -5.0%         |
| 8 숙박 및 음식점업(I)               | 0.0%         | -3.0%         |
| 9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J)   | 4.2%         | 14.9%         |
| 10 금융 및 보험업(K)               | 0.0%         | 3.7%          |
| 11 부동산업 및 임대업(L)             | 0.0%         | 8.7%          |
| 12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M)       | 0.0%         | 0.5%          |
| 13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N)     | -14.6%       | 1.7%          |
| 14 교육 서비스업(P)                | 0.0%         | 5.0%          |
| 15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Q)    | 0.0%         | 3.2%          |
| 16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개인 서비스업(S)  | 0.0%         | 11.9%         |
| 사회적기업 전체 업종                  | 0.0%         | 4.9%          |

※ 상기 업종분류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은 전체 사회적기업 수치로 측정

\* 업종 내 사회적기업 부재 또는 부족으로 등급별 구간 산출이 불가능한 업종(7개 분야)

- (부재) 광업(B),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O),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 소비 생산활동(T), 국제 및 외국기관(U)
- (부족)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D), 금융 및 보험업(K), 부동산업 및 임대업(L)

[참고자료 8] 영업성과(지표 12)

(단위: 천 원)

| 업종 분류       |                              | 0%<br>20% 미만   | 20% 이상<br>40% 미만           | 40% 이상<br>60% 미만          | 60% 이상<br>80% 미만         | 80% 이상<br>100% | 중위값     |
|-------------|------------------------------|----------------|----------------------------|---------------------------|--------------------------|----------------|---------|
| 1           | 농업, 임업 및 어업(A)               | -17,974<br>미만  | -17,974 이상<br>3,111 미만     | 3,111 이상<br>17,888 미만     | 17,888 이상<br>51,329 미만   | 51,329<br>이상   | 10,830  |
| 2           | 제조업(C)                       | -56,195<br>미만  | -56,195 이상<br>301 미만       | 301 이상<br>21,127 미만       | 21,127 이상<br>88,287 미만   | 88,287<br>이상   | 9,273   |
| 3           |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 재생 및 환경 복원업(E) | -4,510<br>미만   | -4,510 이상<br>31,019 미만     | 31,019 이상<br>60,102 미만    | 60,102 이상<br>144,475 미만  | 144,475<br>이상  | 46,417  |
| 4           | 건설업(F)                       | -38,413<br>미만  | -38,413 이상<br>3,788 미만     | 3,788 이상<br>12,696 미만     | 12,696 이상<br>52,281 미만   | 52,281<br>이상   | 9,881   |
| 5           | 도매 및 소매업(G)                  | -39,587<br>미만  | -39,587 이상<br>-6,626 미만    | -6,626 이상<br>14,125 미만    | 14,125 이상<br>62,275 미만   | 62,275<br>이상   | 3,923   |
| 6           | 운수업(H)                       | -39,719<br>미만  | -39,719 이상<br>8,098 미만     | 8,098 이상<br>29,503 미만     | 29,503 이상<br>116,216 미만  | 116,216<br>이상  | 18,578  |
| 7           | 숙박 및 음식점업(I)                 | -38,802<br>미만  | -38,802 이상<br>-17,604 미만   | -17,604 이상<br>-1,874 미만   | -1,874 이상<br>11,898 미만   | 11,898<br>이상   | -10,970 |
| 8           |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J)     | -48,378<br>미만  | -48,378 이상<br>3,632 미만     | 3,632 이상<br>17,903 미만     | 17,903 이상<br>56,954 미만   | 56,954<br>이상   | 8,574   |
| 9           | 부동산업 및 임대업(L)                | -543,996<br>미만 | -543,996 이상<br>-232,694 미만 | -232,694 이상<br>-41,919 미만 | -41,919 이상<br>114,061 미만 | 114,061<br>이상  | -85,712 |
| 10          |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M)          | -35,106<br>미만  | -35,106 이상<br>2,680 미만     | 2,680 이상<br>18,796 미만     | 18,796 이상<br>70,975 미만   | 70,975<br>이상   | 7,598   |
| 11          |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 지원 서비스업(N)       | -33,533<br>미만  | -33,533 이상<br>9,232 미만     | 9,232 이상<br>25,216 미만     | 25,216 이상<br>58,969 미만   | 58,969<br>이상   | 17,005  |
| 12          | 교육 서비스업(P)                   | -53,153<br>미만  | -53,153 이상<br>-10,662 미만   | -10,662 이상<br>2,464 미만    | 2,464 이상<br>21,498 미만    | 21,498<br>이상   | -2,960  |
| 13          |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Q)           | -72,312<br>미만  | -72,312 이상<br>-15,281 미만   | -15,281 이상<br>4,460 미만    | 4,460 이상<br>32,402 미만    | 32,402<br>이상   | -2,027  |
| 14          |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R)       | -69,840<br>미만  | -68,840 이상<br>-24,597 미만   | -24,597 이상<br>-3,319 미만   | -3,319 이상<br>10,655 미만   | 10,655<br>이상   | -14,640 |
| 15          |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개인 서비스업(S)     | -75,207<br>미만  | -75,207 이상<br>-36,644 미만   | -36,644 이상<br>-3,867 미만   | -3,867 이상<br>31,999 미만   | 31,999<br>이상   | -15,729 |
| 사회적기업 전체 업종 |                              | -49,039<br>미만  | -49,039 이상<br>-6,500 미만    | -6,500 이상<br>11,526 미만    | 11,526 이상<br>50,061 미만   | 50,061<br>이상   | 3,670   |

※ 상기 업종분류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은 전체 사회적기업 수치로 측정

\* 업종 내 사회적기업 부재 또는 부족으로 등급별 구간 산출이 불가능한 업종(6개 분야)

- (부재) 광업(B),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O),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 소비 생산활동(T), 국제 및 외국기관(U)
- (부족)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D), 금융 및 보험업(K)

[참고자료 9] 1인당 매출액(지표 13)

(단위: 천 원)

| 업종 분류       |                              | 0%<br>20% 미만 | 20% 이상<br>40% 미만       | 40% 이상<br>60% 미만        | 60% 이상<br>80% 미만         | 80% 이상<br>100% | 중위값    |
|-------------|------------------------------|--------------|------------------------|-------------------------|--------------------------|----------------|--------|
| 1           | 농업, 임업 및 어업(A)               | 35,565<br>미만 | 35,565 이상<br>58,818 미만 | 58,818 이상<br>121,763 미만 | 121,763 이상<br>264,210 미만 | 264,210<br>이상  | 75,366 |
| 2           | 제조업(C)                       | 34,544<br>미만 | 34,544 이상<br>58,887 미만 | 58,887 이상<br>87,303 미만  | 87,303 이상<br>156,914 미만  | 156,914<br>이상  | 72,327 |
| 3           |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 재생 및 환경 복원업(E) | 38,847<br>미만 | 38,847 이상<br>68,488 미만 | 68,488 이상<br>75,657 미만  | 75,657 이상<br>89,178 미만   | 89,178<br>이상   | 72,404 |
| 4           | 건설업(F)                       | 47,304<br>미만 | 47,304 이상<br>74,959 미만 | 74,959 이상<br>98,983 미만  | 98,983 이상<br>138,663 미만  | 138,663<br>이상  | 87,482 |
| 5           | 도매 및 소매업(G)                  | 33,435<br>미만 | 33,435 이상<br>56,173 미만 | 56,173 이상<br>107,315 미만 | 107,315 이상<br>211,269 미만 | 211,269<br>이상  | 83,489 |
| 6           | 운수업(H)                       | 20,524<br>미만 | 20,524 이상<br>38,074 미만 | 38,074 이상<br>64,302 미만  | 64,302 이상<br>111,756 미만  | 111,756<br>이상  | 45,864 |
| 7           | 숙박 및 음식점업(I)                 | 18,901<br>미만 | 18,901 이상<br>28,473 미만 | 28,473 이상<br>37,376 미만  | 37,376 이상<br>59,514 미만   | 59,514<br>이상   | 32,038 |
| 8           |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J)     | 41,245<br>미만 | 41,245 이상<br>61,961 미만 | 61,961 이상<br>81,936 미만  | 81,936 이상<br>111,785 미만  | 111,785<br>이상  | 71,865 |
| 9           | 부동산업 및 임대업(L)                | 59,256<br>미만 | 59,256 이상<br>86,459 미만 | 86,459 이상<br>95,493 미만  | 95,493 이상<br>104,222 미만  | 104,222<br>이상  | 92,456 |
| 10          |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M)          | 34,697<br>미만 | 34,697 이상<br>47,798 미만 | 47,798 이상<br>68,515 미만  | 68,515 이상<br>93,053 미만   | 93,053<br>이상   | 54,905 |
| 11          |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 지원 서비스업(N)       | 17,456<br>미만 | 17,456 이상<br>21,690 미만 | 21,690 이상<br>27,343 미만  | 27,343 이상<br>41,072 미만   | 41,072<br>이상   | 24,308 |
| 12          | 교육 서비스업(P)                   | 20,689<br>미만 | 20,689 이상<br>29,635 미만 | 29,635 이상<br>46,781 미만  | 46,781 이상<br>81,965 미만   | 81,965<br>이상   | 37,304 |
| 13          |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Q)           | 14,514<br>미만 | 14,514 이상<br>18,109 미만 | 18,109 이상<br>22,650 미만  | 22,650 이상<br>43,186 미만   | 43,186<br>이상   | 20,680 |
| 14          |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R)       | 19,988<br>미만 | 19,988 이상<br>33,796 미만 | 33,796 이상<br>55,493 미만  | 55,493 이상<br>106,714 미만  | 106,714<br>이상  | 45,850 |
| 15          |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개인 서비스업(S)     | 18,320<br>미만 | 18,320 이상<br>29,557 미만 | 29,557 이상<br>38,782 미만  | 38,782 이상<br>48,491 미만   | 48,491<br>이상   | 33,084 |
| 사회적기업 전체 업종 |                              | 22,168<br>미만 | 22,168 이상<br>37,548 미만 | 37,548 이상<br>63,673 미만  | 63,673 이상<br>113,589 미만  | 113,589<br>이상  | 48,786 |

※ 상기 업종분류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은 전체 사회적기업 수치로 측정

\* 업종 내 사회적기업 부재 또는 부족으로 등급별 구간 산출이 불가능한 업종(6개 분야)

- (부재) 광업(B),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O),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 소비 생산활동(T), 국제 및 외국기관(U)
- (부족)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D), 금융 및 보험업(K)